

노동인권보고서 01년

제1부 1990년 노동인권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2. 노동자의 상태

제2부 노동인권 침해상황

- 제1장 정부정책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 제2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 제3장 법적 제도적 탄압
- 제4장 산업재해

제3부 보론

- 제1장 여성노동자의 문제
- 제2장 노동자의 주택문제

제4부 부록

1. 1990년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일지
2. 각종 성명서와 참고자료
3. 『노동인권소식』 중 '역장'

노동인권보고서

1990
제1집

노동인권회관

인권정보자료실
R1.27.1

1990년도
제1집

인권정보자료실
R1.27.1

노동인권 보고서

노동인권회관 편

역사비평사

● 1990년 노동인권 탄압의 특징은

정부 각 부처를 모두 동원하여 각종 정책과 방침으로
노동조합운동을 포위해 들어왔다는 것과 거의 모든
파업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구속으로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짓밟았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상의 탄압과 물리적 탄압이 결합되어

1990년의 노동인권은 1987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

— 노동인권상황 개관 중에서 —

* 노동인권회관의 위치는

서울 구로구 가리봉 1동 135-75

전화 : 858-5837~8

팩스 : 862-7383

노동인권 보고서

1990

●
제 1집

노동인권회관 편

역사비평사

책을 내면서

노동인권회관은 1989년 말에 세워졌다. 그리고 햇수로 3년 만에, 실제로는 1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노동인권보고서』를 세상에 내놓게 되었다.

그것도 1990년 노동인권보고서를 1991년 초가 아닌, 해의 반이 지나 6월에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이 일을 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방대한 자료와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낼 수 있는 '눈'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처음의 의욕과는 달리 작업이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 막연하였고, 또 그것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한동안 헤매기도 하였다. 5개월 동안 몇명이 달라붙어 자료를 구하기 위해 사방을 돌아다니고 합숙까지 한 결과 이제 초라하나마 세상 앞에 우리의 활동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게 되니 그리 기쁠 수가 없다.

실로 우리나라 노동인권의 실태는 너무나 저열하다. 1988년 이후 구속된 노동자수만도 1,211명으로 제6공화국은 거의 하루에 한 명꼴로 노동자들을 구속시켰다. 자본가들의 이해가 무차별적으로 관철되어 나가는 제6공화국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설 자리 없이 난도질당했으며, 노동자들은 공안통치의 가장 철저한 피해자가 된 것이다.

이미 언론에 의해서도 죽음의 공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원진레이온의 직업병 실태가 조금씩 폭로되어온 최근 3년 동안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검진 한 번 받아보지 못한 채 이차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쓰였다는 이황화탄소에 노출되어 마비되거나 죽어가고 있다. 원진레이온이 세워진 지 30년이라 하니 그 이전에 더 열악했을 근로조건과 환경조건 속에서 날마다 조금씩 죽어갔을 선배노동자들을 생각하니 너무도 기가 막혀 인권을 따질 기력조차 없다. 아니 이렇게 저열한 노동인권의 실태 탓에 우리는

인권을 모르고 사는 것이 아닐까하는 의문도 생긴다.

그만큼 이 땅의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것을 애초에 붙일 필요가 왜 있었는가 싶게 절박하게 외면당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최소한 인간이라는 것도 확인하기 힘든 상황을 경험하곤 했다.

그러다보니 아주 극적이고 처참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는 어떤 문제의식도 분노의 감정도 갖지 못하는 불감증에 다들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인권은 단순히 고문 안당하고 살해 안당하고 폭력 안당할 권리가 아니다. 삶의 인간다움이 보장되어야 할 권리,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지켜나가는 우리의 권리인 것이다.

살 수 있는 권리, 직업병에 걸리지 않을 권리, 편안하게 먹고 잘 수 있는 공간확보의 권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한다고 하여 탄압받지 않을 권리, 여성도 인간답게 사회적 활동 속에 참가하고 대접받을 권리, 자신의 사상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짐승보다 못한 야만 속에서 몸부림치는 우리 시대의 인권문제 외에도 모두 인권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노동인권보고서』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노동자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공권력에 의해서, 또 자본가에 의해서 어떻게 뒤틀리고 억압받고 망가지고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서 그 실체에 접근하여 알리자는 것이다. 그 억압의 실체를 단순히 구속자수의 통계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들이 노동하면서,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정치세력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겪어야 하는 각종 탄압과 구조적인 억압을 전면적으로 밝혀보고자 했다.

돌이켜 보면 1990년은 노동인권의 측면에선 더할 나위없이 답답한 해였다. 1990년의 탄압은 단순한 물리적 탄압만이 아니었다. 그 전해 말부터 엄청난 매스컴을 동원하여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노동자임금인상물가책임론 등 노동자들의 삶의 요구를 사회 계층층으로부터 적대하게 만들어 노동자들을 마음놓고 주무르려는 의도가 계획적이고 노골적으로 드러난 해였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112신고로도 연행될 수 있는 강도만도 못한 대상으로 취급당하였다.

사용자 탄압은 법을 악용한 행위로서 두드러졌다. 고소로 포위당한 '1990 임투'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작은 사안만 걸려도 업무방해니 뭐니 하여 노조의 모든 간부들을 고소했고 경찰은 이들을 예외없이 구속하였다. 그리고 세상에 해고된 노동자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산업재해의 문제도 여전하였다. 원진레이온뿐만 아니라 이미 곳곳에서 직업병실태가 조금씩 밝혀져 가고 있고 사고성 재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반면 정부나 자본가들의 이에 대한 대처는 조금도 좋아지지 않고 있다.

노력은 했지만 많이 부족하다. 특별한 조사나 연구성과를 내지 못한 것은 첫해의 아쉬움으로 남기고 내년 호에서 기약해본다.

진정코 이 책 한 권이 노동자의 인권의 실태를, 아니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관점이라도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만 있다면 기쁘겠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수고해주신 미술평론가 유흥준 선생님과 잘 팔리지 않을 책을 맡아서 정의껏 내주신 역사비평사의 장두환 사장님, 그리고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재정지원을 해주신 몇 분의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노동인권회관이 서는 데 큰일을 하셨던 돌아가신 조영래 변호사님께 이 책을 바치고 싶다.

1991년 6월 15일

노동인권회관 소장 박 석 운

노동인권 보고서

■ 책을 내면서 · 3

제 1 부 1990년 노동인권 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13
1) 1990년 노동인권 탄압의 특징	
2) 위협받는 생존권	
2. 노동자의 상태	18
1) 월가와 임금	
2) 조직운동	
3) 노동자의식	

제 2 부 노동인권 침해상황

제 1 장 정부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정부정책에 나타난 노동자 인권.....	29
1) 전노협 창립을 원천봉쇄	
2) 산업평화조기정책과 임금안정대책회의	
3) 불법쟁의 판단기준	
4) 업무조사와 전노협 탈퇴압력	
5) 노동부지침과 경단협지침	
2. 공권력투입 강제진압	44
1) 적법파업에 대한 강제	
2) 112 신고로 경찰 투입	
3) 무력진압과 투쟁의 확산	
4) 걸기대회 영화상영까지도 방해	
5) 무력진압 맞선 노동자본신	
3. 구속당한 노동자인권.....	58
1) 전노협 관련 구속사례	
2) 불철 임금교섭 앞둔 구속 바람	
3)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1990 제1집

4. 고문과 블랙리스트.....	65
1) 납치·고문·가혹행위	
2) 엄존하는 블랙리스트	
3) 보안사 노동자 사찰	
5. 조직사건	73
1)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2) 진보적 소장학자 국가보안법 구속	
3) 일명 '북부지역노동자연맹'	
4)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5)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6)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	
7)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제 2 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사용자 탄압의 특징	80
2. 납치·폭행·감시·도청.....	82
1) 납치·폭행	
2) 감시·도청	
3. 노동조합 탄압	91
1) 노조결성 및 일상적 노조활동 방해	
2) 노조외해 공작	
3) 단체행동권 침해	
4.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107
1) 고용문제의 확산	
2) 외국인투자기업에서의 고용불안정	
5. 노동자의 자살.....	128
6. 경단협 지침.....	134
1) 무노동 무임금 적용 급증	
2) 단체협약을 둘러싼 노조탄압	

노동인권 보고서

제 3 장 법적 제도적 탄압.....	141
1. 노동부의 부당업무처리	143
1) 위법부당한 업무지침	
2) 위법부당한 유권해석	
2. 노동위원회의 부당판정	152
3. 행정관청의 부당업무처리	156
4. 기타 행정기관의 부당업무처리	161
1) 경찰의 부당업무처리	
2) 병무청의 부당업무처리	
5. 노동관계법 중 악법조항	163
1) 노동조합법 제3조 4호	
2) 노동조합법 제8조	
3)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 2	
4) 노동조합법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제2항	
5) 노동조합법 제21조, 제30조, 제34조	
6)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8) 근로기준법 제10조	
9)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10) 근로기준법 제41조	
제 4 장 산업재해.....	174
1. 1990년 산업재해의 특징	174
2. 산업재해의 실태	178
1) 사고성 재해	
2) 직업병	
3. 제도적 측면	200
1) 예방적 측면	
2) 치료·보상측면	

1990 제1집

- 3) 재할 측면
- 4) 산업재해 관련법 개정

제3부 보론

제 1 장 여성노동자의 문제.....	225
1. 여성노동자의 차별실태	226
1) 임금차별	
2) 분리된 임금·직급체계	
2. 여성노동자의 고용불안정	231
1) 여성노동자의 고용감소	
2) 여성노동자의 고용악화	
3) 기혼여성 노동자의 증가	
3. 모성보호	240
1) 탁아현실과 탁아제도의 문제점	
2) 여성노동자와 직업병	
제 2 장 노동자의 주택문제.....	248
1. 노동자의 주거현황	249
2. 근로자주택의 현황	255
3. 주택관련 노동자의 요구	259
제 4 부 부록	
1. 1990년 정부와 사용자의 탄압일지	267
2. 각종 성명서와 참고자료	279
3. 『노동인권소식』 중 역장	330

1. 노동인권의 현주소 1

2. 노동자의 상태 2

3. 노동인권의 현주소 3

4. 노동자의 상태 4

5. 노동인권의 현주소 5

6. 노동자의 상태 6

7. 노동인권의 현주소 7

8. 노동자의 상태 8

9. 노동인권의 현주소 9

10. 노동자의 상태 10

11. 노동인권의 현주소 11

12. 노동자의 상태 12

13. 노동인권의 현주소 13

14. 노동자의 상태 14

15. 노동인권의 현주소 15

16. 노동자의 상태 16

17. 노동인권의 현주소 17

18. 노동자의 상태 18

19. 노동인권의 현주소 19

20. 노동자의 상태 20

21. 노동인권의 현주소 21

22. 노동자의 상태 22

23. 노동인권의 현주소 23

24. 노동자의 상태 24

25. 노동인권의 현주소 25

26. 노동자의 상태 26

27. 노동인권의 현주소 27

28. 노동자의 상태 28

29. 노동인권의 현주소 29

30. 노동자의 상태 30

31. 노동인권의 현주소 31

32. 노동자의 상태 32

33. 노동인권의 현주소 33

34. 노동자의 상태 34

35. 노동인권의 현주소 35

36. 노동자의 상태 36

37. 노동인권의 현주소 37

38. 노동자의 상태 38

39. 노동인권의 현주소 39

40. 노동자의 상태 40

41. 노동인권의 현주소 41

42. 노동자의 상태 42

43. 노동인권의 현주소 43

44. 노동자의 상태 44

45. 노동인권의 현주소 45

46. 노동자의 상태 46

47. 노동인권의 현주소 47

48. 노동자의 상태 48

49. 노동인권의 현주소 49

50. 노동자의 상태 50

51. 노동인권의 현주소 51

52. 노동자의 상태 52

53. 노동인권의 현주소 53

54. 노동자의 상태 54

55. 노동인권의 현주소 55

56. 노동자의 상태 56

57. 노동인권의 현주소 57

58. 노동자의 상태 58

59. 노동인권의 현주소 59

60. 노동자의 상태 60

61. 노동인권의 현주소 61

62. 노동자의 상태 62

63. 노동인권의 현주소 63

64. 노동자의 상태 64

65. 노동인권의 현주소 65

66. 노동자의 상태 66

67. 노동인권의 현주소 67

68. 노동자의 상태 68

69. 노동인권의 현주소 69

70. 노동자의 상태 70

71. 노동인권의 현주소 71

72. 노동자의 상태 72

73. 노동인권의 현주소 73

74. 노동자의 상태 74

75. 노동인권의 현주소 75

76. 노동자의 상태 76

77. 노동인권의 현주소 77

78. 노동자의 상태 78

79. 노동인권의 현주소 79

80. 노동자의 상태 80

81. 노동인권의 현주소 81

82. 노동자의 상태 82

83. 노동인권의 현주소 83

84. 노동자의 상태 84

85. 노동인권의 현주소 85

86. 노동자의 상태 86

87. 노동인권의 현주소 87

88. 노동자의 상태 88

89. 노동인권의 현주소 89

90. 노동자의 상태 90

91. 노동인권의 현주소 91

92. 노동자의 상태 92

93. 노동인권의 현주소 93

94. 노동자의 상태 94

95. 노동인권의 현주소 95

96. 노동자의 상태 96

97. 노동인권의 현주소 97

98. 노동자의 상태 98

99. 노동인권의 현주소 99

100. 노동자의 상태 100

제1부

1990년 노동인권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2. 노동자의 상태

1990년 노동인권상황 개관

1. 노동인권의 현주소

1990년, 21세기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서 한국의 노동자 인권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1990년 들어 더욱 두드러졌던 노동운동탄압과 물가고, 한자리수 임금인상 등을 떠올리며 부정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1990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1990년의 임금인상 투쟁에 대비한 정부의 '경제위기설'이 널리 유포되었다. 1월 22일에는 민정당, 통일민주당, 공화당이 국민의 의사를 거스르고 합당하여 민주자유당을 만들으로써 같은 날 역사적 발걸음을 내디딘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의 출범과 선명하게 대비되었다.

3당합당으로 여소야대의 정국을 여대야소로 역전시켜 거칠 것 없게 된 민자당은 경제난국을 극복한다는 미명을 걸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조금씩 신장되어가고 있던 노동인권과 노동조합운동을 가혹하게 탄압하기 시작했다.

1990년 노동인권탄압의 특징은 정부의 각 부처를 모두 동원하여 각종 정책과 방침으로 노동조합운동을 포위해 들어왔다는 것과 거의 모든 파업 사업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구속으로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것이었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책상의 탄압과 물리적 탄압이 결합되어 1990년 노동인권은 1987년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노동자 생존권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건강, 고용 안정, 주거의 권리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도 1990년의 특징으로 꼽힐 수 있겠다.

1990년 노동운동탄압과 생존권 위협을 차례로 살펴보자.

1) 1990년 노동운동 탄압의 특징

1990년 한해는 다른 해보다도 노동관련 정책이나 방침이 자주, 그리고 신속하게 제출된 해였다. 그리고 그 정책의 성격으로 보아 1990년 탄압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정경유착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1990년 1월 20일 발표된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의 방침,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기준」, 「10·13 범죄와의 전쟁 후속 조치」를 비롯하여 각종 방침들, 또 상공부가 작성한 「노동관계법의 검토」라는 노동법 개정시안자료는 모두가 정부당국이 사용자단체의 건의를 받거나 사용자단체가 이미 내부지침으로 확정한 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본서 제2부 1장 5절 참조).

둘째, 공권력의 투입으로 집행되었다. 전노협은 1월 20일 「대책회의」 방침에 따라 불법단체로 규정되고 와해대상이 되었다. 1월 22일의 전노협 창립대회는 물론 11월 11일 전국노동자대회 등 전노협 주최의 각종 집회는 허가신청을 낸 보람도 없이 번번이 원천봉쇄당했고 이를 위해 2~3일 전부터 상경노동자를 막기 위한 작전이 펼쳐지는가 하면 하루 전부터 엄청난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예상 장소를 봉쇄하기도 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집시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지금도 제5공화국 시절 못지 않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조항이 아니라 탄압하는 조항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또 파업사업

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상 유례없는 숫자를 기록했으며 구속노동자의 숫자도 최고를 기록했다.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전년에 이은) 육·해·공 진압작전, KBS 방송사에 대한 경찰 투입(계엄을 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는), 전년에 비해 5분의 1로 줄어든 노동쟁의 건수에 대비되는 쟁의사업장 공권력투입 회수의 2배 증가(「한겨레신문」, 1990년 7월 8일자) 등이 정부의 각종 노동정책과 세부방침을 집행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힘에 의존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셋째, 노동 3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전노협은 정부당국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되어 있으나 전노협은 결사의 자유는 물론 노동자의 단결권에도 부합되며, 범죄조직이나 반국가단체가 아닌 한 불법단체가 아니고, 단지 현행 노동조합법상 한국노총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노동조합법상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임의조직이라는 법해석이 유력하다. 그런데 단결권의 전국적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전노협을 '와해대상'으로 규정한 것은(1990년 1월 20일 대책회의) 현정부가 산업평화를 해친다는 추상적인 근거를 들어 단결권을 공공연히 침해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밖에도 공권력 투입 등으로 사용자의 교섭의무라든가 노사간 자율적 교섭을 저해하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한편(단체교섭권의 침해) 적법파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 노조지도자 구속에 쟁의조정법보다 업무방해죄 적용, 쟁의로 인한 손실을 노조에 민사소송으로 청구하라는 노동부지침 등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정부당국인 것이다.

제6공화국 출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강조했던 민주적 재권리의 확대와 노동 3권 보장은 바로 그에 의해 부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위협받는 생존권

1990년 들어 3월까지 3개월 동안 산재로 인한 사망자가 매일 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5월 노동부 발표). 이것이 상반기 건설물량

폭주와 숙련노동자의 부족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유로든 1990년의 산재사고발생률이 12.44% 증가하고 산재사망자수도 1,724명에서 2,236명으로 증가했다는 것은(전년 대비) 노동환경과 정부의 산업안전대책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줄 뿐이다. 최근 산재 발생률이 약간이나마 낮아진 것이 1987년 이후 노조운동의 활성화와 더불어 고조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 노조의 산업안전활동 강화, 관련 전문가들의 노력에 힘입은 것이라 본다면, 1990년 들어 산업재해가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은 정부의 노조운동탄압과 현저하게 위축된 노조활동, 이에 편승한 사용자의 의무태만을 그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고용불안도 다양한 형태로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1990년 실업률은 한국노동연구원(「노동동향분석」 3/4분기)에 따르면 1980년대 최저치인 2.4%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각종 불안전, 불안정 고용까지 취업인구에 포함시킨 수치로서 최근 산업구조조정에 따른 고용불안을 반영하고 있지는 못하다.

위 자료에 의하더라도 제조업 쪽은 꾸준히 고용이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직은 8%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업 고용은 9.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제조업 생산직에서 서비스업으로 노동인구가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들은 제조업 쪽의 생산성을 높이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보다는 '게으른 노동자'를 닮으며 값싼 해외노동력의 수입을 정부에 요청하거나 자연감원을 적극 유도하여 하청이나 임시고용, 파트타임 등 변칙고용으로 인건비를 절약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때로는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풍산금속처럼 집단감원(사실은 집단해고)을 감행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1989년에 이어 1990년에도 계속하여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특히 섬유, 전자 쪽) 사용자측은 이를 빌미로 노조활동의 위축 또는 와해를 노리기도 한다. 휴·폐업 사업장에는 이러한 노조탄압의 성격이 경영상의 이유를 앞지르는 경우도 있어 이를 위장 휴·폐업이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사용자는 인건비 절약과 노조해산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해 치밀한 전략으로 폐업을 준비하기도 한다.

대체고용된 하청공장노동자나 임시고용, 파트타임 등의 불안정고용에서는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기본권의 보장을 받기 어렵고 늘 해고의 불안을 안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고용합리화 없는 경영합리화는 자칫 노동자의 생존권을 크게 위협할 소지가 있다.

노동자들의 주거상태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1990년 초부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부동산 가격폭등이 주택보유율이 17.8%에 불과한 노동자에게(전노협, 「생계비모형을 위한 실태조사」) 가장 치명적이었음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한국통계월보』 2/4 분기 기준으로 주거비가 평균 35.8% 인상되었으며 이 중 전세는 74.3%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동기 대비).

이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의 가계지출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5% 안팎으로 노동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어 1990년 들어 노동자의 주거상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노동자들은 일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야 하는 등 주거생활의 안정을 크게 위협받고 있으며, 2인 이상 가족의 40% 이상이 화장실 공동사용, 5인 가족(월세) 주거면적이 평균 9.25평에 불과한 점 등으로 보아 주거환경 역시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 노동자의 상태

1) 물가와 임금

199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부당초억제선	한국개발연구원 추정치	2/4	3/4
5~7%	12~13%	8.2%	9.0%
	(「중앙일보」, 6월 15일자)	(한국노동연구원)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0년 물가상승률은 당초 정부억제선을 훨씬 넘어섰다. 한자리수 임금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던 정부의 임금동결 정책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1990년 말, 1991년 초까지 계속하여 폭등하고 있는 추세이다(1981년 이후 최고치기록). 게다가 위 수치에 나타난 전국 소비자물가지수는 자동차, 사치성 소비재까지 모두 포함시킨 것으로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물가압력을 나타내주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된다.

일례를 들어 1990년 12월 18일자로 대한상공회의소가 조사 발표한 바에 따르면 1989년 12월부터 1년 동안의 소비자물가를 생필품 중심으로 살펴볼 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생필품 소비자물가지수 (단위 : %)

교통비 (전월)	쌀	마른고추	참깨	쇠고기	돼지고기	소금	등유	시멘트
25	10.0	40.7	44.8	12.2	61.9	50.0	28	39.1

자료 : 「동아일보」, 1990년 12월 18일자.

이와 같이 피부에 와닿는 물가지수는 임금을 30% 이상 인상해도 겨우 이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할 정도인데도 1990년 임금인상률은 1987년 이후 3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수를 기록했다.

임금인상타결률은 1990년 11월 말 현재로 6,780개 대상업체 중 5,854개 업체에서 끝마쳐 91.7%의 타결률을 보이고 있으며 인상률은 지난

해의 절반수준인 9%에 머물렀다(생산직 10.3%, 사무직 7.6%). 이 중 전국 노동조합협의회 소속 노조의 경우 평균인상률이 16.5%로 대부분 높은 인상률을 보였으며 재벌기업의 인상률은 대체로 6.5%선에 머물러 평균치에도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중앙일보」, 1990년 6월 5일자).

1990년 임금인상률 (단위 : %)

노총요구안	전노협요구안	전체평균	전노협노조	재벌기업
17.3~20.5	23.3	8.8	16.5	6.5

* 1989년 인상율 : 17.8%

임금인상률이 한자리수에 그치고 물가상승률은 두자리수를 넘어서면서 노동자의 임금인상효과는 거의 백지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실질임금 상승률을 5.3%(1990년 3/4분기)로 제시하고 있으나 앞서 말했듯이 생필품값의 대폭인상추세와 35% 이상 오른 주거비 덕분에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는 소리가 높다.

노총 노동자의식조사

임금인상보다 물가상승이 높았다	83%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이 비슷했다	12.4%

자료 : 「한겨레신문」, 1990년 2월 21일자.

위 설문조사의 반응을 보면 노동자들은 임금인상효과에 대해 95.4%가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심각한 물가문제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90년 임금교섭평가」(『노동동향분석』 4/4분기, 77쪽)에서도 “물가 안정 없이 임금안정 없고 임금안정 없이 노사관계의 안정은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정부가 1990년 초, 임금인상철폐를 겨냥하여 광범위하게 유포시킨 경제위 기설, 노동자책임론은 결국 1990년도의 실질경제성장률(GNP 상승률), 생산성지수의 뚜렷한 회복세로 인하여, 그리고 임금동결에도 불구하고 치솟기만 하는 물가에 의해 설득력을 잃었으며, 노동자는 경제위기의 주범이 아니라 가장 큰 피해자임이 보다 명백해졌다. 오히려 경제를 불안

하게 하는 것은 부동산투기, 선거자금방출, 증권시장부양책, 재벌여신규제 완화 등으로 통화를 팽창시키고 있는 각종 경제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경제성장률 (단위 : %)

1989년	1990년 전망치	1990년 2/4	3/4
6.8	6.5~9.0	9.9	9.6

자료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동향분석』 각호.

* 전망치 : 정부—6.5%, 경제기획원·한국개발연구원—9.0%

제조업 생산성지수 (단위 : %)

1989년	1990년 1/4	2/4	3/4
6.6	13.4	14.9	14.3

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노동생산성지수』 각호.

이상 1990년의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그리고 그에 못미치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작 노동자의 생활실태는 아직 최저생계에 미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한편 전노협과 노총이 각각 산하조직의 임금인상요구안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매년 조사·발표하는 최저생계비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사용자측은 이 생계비이론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사용자측은 생산성향상을 기준으로 그 범위 내에서 임금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생산성임금론을 강력히 내세우고 있어 노동자측의 최저생계비이론과 대립하고 있으며 실제 인상안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가계지출'(1990년 2/4 분기)을 보면 842,924원으로 노총이나 전노협이 제시한 최저생계비와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총은 근로자가구의 평균 부양가족수를 3.96인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4인 가족 최저생계비에 가까운 가계지출이 나온 셈이어서 경제기획원 자료는 한편으로 최저생계비이론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결국 노동자들은 월평균가계지출 혹은 최저생계비의 44%에 불과한

임금을 받고 있는데 부족분은 잔업, 특근, 철야 등 시간외 작업수당과 (68% 충족) 다른 가족구성원의 수입으로 필요생계비를 메꿔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생계비 충족률 (단위 : 원, %)

전산업		최저생계비 (4인가족기준)	제조업	
정액	총액		정액	총액
457,203 (50.2)	661,840 (72.7)	909,238	400,619 (44.0)	618,565 (68.0)

* 최저생계비는 전노협 실태조사에서, 임금은 1990년 7월 기준

제조업 생산직 최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355,054	335,979	586,194	693,901	909,238

자료 : 「전노협 실태조사」, 1990년 11월 23일.

한국노총 최저생계비 (단위 : 원)

단신남자	단신여자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337,739	332,190	529,042	670,251	875,464

자료 : 「노총조사」, 1990년 5월 31일 기준.

* 도시근로자 월평균가계지출(경제기획원 1990년 2/4)
842,924원(가구당 평균부양가족수 3.96인—노총)

이렇듯 최저생계비와 임금의 항상적 괴리현상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계속하여 시간외근무, 무리한 노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주원인이기도 하다. 1990년 10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전산업에서 일제히 법정노동시간이 주 44시간으로 단축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노동시간 주 50시간대를 돌파하여 전산업, 전직종 평균이 주 48시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아직 제조업 생산직은 50시간에 머물러 있어 노동자의 휴식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금구성 추이를 보아도 총액에서 기본급이 차지하는 비율이 52.9%(1989년)에 불과하며 매년 비중도 낮아지는 추세에 있어 주 44시간 노동으로 최저생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단위 : 시간)

전산업	제조업	제조업생산직
48	49.5	50

자료 :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

주장은 임금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전제가 되고 있다.

2) 조직운동

1990년 한해도 극심했던 사용자와 정부의 탄압을 뚫고 노동자의 의식과 조직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1989년 연말기준으로 노동조합의 숫자는 7,883개로 1990년 설립된 신규노조를 감안한다면 8천 개가 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는 1987년 6월 이전과 비교하여 꼭 3배로 증가한 셈이다. 조합원수는 1,932,415명으로 이제 조직 노동자의 수는 200만 명을 육박하고 있다.

연합조직적으로는 한국노총(21개 산별노조로 구성) 외에 1월 22일 창립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17개 지역·업종노조협의회로 구성)가 노동조합운동을 이끌고 있다.

특히 1990년은 '전노협 원년'으로 불리며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의 결과로 탄생한 신생민주노조들이 전국적으로 단결하여 어용노총의 역사 위에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연 해이기도 하다.

전노협은 출범 당시 '민주노조운동'의 기치를 선명하게 내걸었으며 570개 단위노조, 19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1년에 걸친 집중탄압을 받으면서 최근 많은 단위노조들이 와해되거나 이탈하고 약 290개 노조에 13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1987년 이후 출범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전문기술노동조합연맹,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등이 1990년에도 계속하여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지 못한 채 설립신고서를 반려받았다. 이들 사무·전문직 노동조합은 「13개 업종협의회」를 구성하

여 전체노동자와의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이 업종협의회는 1990년 11월 11일 전노협과 공동주최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는데 1990년 들어 더욱 엄혹해진 노조탄압에 공동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주었다.

특히 1990년 4~5월의 KBS 방송민주화투쟁은 언론·방송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사회민주화에 대한 사명의식과 책임감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전문직노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 1990년 12월 5,000명 이상 조합원을 가진 대규모 사업장 노동조합 15개가 모여 '연대를 위한 대기업노동조합협의회'(이하 연대회의)를 결성하고 사용자와 정부의 노조탄압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이들 연대회의 산하 조합원수는 약 8만 5천명으로서 이 또한 한국노총 유일의 역사를 거부하고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민주노조운동'을 지향하는 새로운 노조운동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민주노조운동의 흐름은 1990년 들어 유례없는 탄압의 돌풍에 휘말리게 되었다. 임투가 시작되기 전부터의 무더기 고소·고발과 파업현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 노조간부 대량구속, 기타 노조활동에 대한 간섭과 단체협약 불이행 등, 심지어 '파업전야'라는 영화상영에까지 공권력을 투입하고 제작자를 입건하였다. 1990년의 조직운동은 이러한 전면적 탄압 속에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즉 노동쟁의는 지난 1989년에 비교하여 80%가 감소했고 공권력투입과 구속노동자의 숫자는 몇 배 증가한 것이다.

연도·원인별 노사분규 발생추이 (단위 : 건)

연도	계	임금체불	임금인상	조업단축 휴·폐업	해고	부당 노동행위	근로조건 개선	기타
86	276	48	75	11	34	16	48	44
87	3,749	45	2,629	11	51	65	566	382
88	1,873	59	946	20	110	59	136	543
89	1,616	59	742	30	81	10	21	673
90	322	10	167	6	18	—	2	119

연도 · 유형별 발생추이 (단위 : 건)

연도	계	작업거부	농성	시위	기타
89	1,616	632	898	1	85
90	322	261	43	1	17

자료 :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호.

위 표를 보면 1990년의 쟁의건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은 물론 쟁의방법에서도 농성의 비율이 감소하여 쟁의형태 역시 위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쟁의원인으로서 부당노동행위나 해고 임금체불 등이 감소한 것이 아닐 텐데도 발생건수가 줄어든 것은 원인제공에 관계없이 쟁의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한국노총은 전노협이 집중된 탄압을 받는 동안 전노협의 출범을 “노동운동권의 분열을 초래하는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기존의 방식대로 정부당국, 경제단체와의 대화를 통한 노동운동에 주력해 왔다. 물론 노총 내부에도 ‘민주노조운동’ ‘노총민주화’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요구가 높아가고 있고, 정권의 시녀노릇을 해온 ‘한국노총 오욕의 역사’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1990년 2월에 치러진 노총위원장선거에서도 노총개혁을 선언한 박종근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기존노총을 고수하려는 보수세력과 내부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듯하다.

어쨌든 전노협이 정부당국의 ‘와해대상’으로 꼽혀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노총은 노조운동의 유일대표자로서 정부와 사용자의 교섭창구로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5월 1일 장충체육관에서 메이데이행사를 갖고 폐지되었던 노동절을 기념하는가 하면 근로자주택건설 시행계획을 당국에 건의하고 노동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지지체 등 정치활동에 참여를 선언하는 등, 법적 제도적 개선과 정치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3) 노동자 의식

1990년 2월 한국노총(위원장 박종근)이 전국 1,591명의 노조간부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자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3%가 물가상승이 임금인상을 앞지르고 있다고 대답했으며 지방자치제실시와 관련 노조 출신의 지방의회 출마에 83.6%의 노동자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식분포는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배무기)과 「서울대 인구발 전문제연구소」가 전국의 노동자 2,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결과(1990년 3월 발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는 최근 3년간의 임금인상 결과 살림살이가 나아졌느냐는 질문에 그대로이다(54.3%), 오히려 더 나빠졌다(12.0%)로 66.3%가 부정적인 대답을 했고 특정 정당지나 노조와 정치세력과의 직접연대활동에는 부정적이나 혁신정당에 대해서는 46.6%가 필요하다, 39.7%가 필요하지만 시기가 이르다고 답해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노동조합의 성격에 따른 노동자의 의식차이를 분석한 석사논문이 나와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 연세대 경영대학원의 한상진씨(27세, 남)의 1990년 석사학위논문에 따르면 노동자의 정치, 사회, 경제적 의식이 노총과 서노협 소속 노동자들 간에 주목할 만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경제성장이나 좌경세력에 관한 현정권의 논리가 서노협 노동자들한테서 더 많은 반대에 부딪치고 있으며 새로운 정치질서에 대한 희망도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노총과 서노협에 관계없이 전체응답자의 87.4%가 ‘회사가 이익이 많이 나도 근로자들이 자기몫을 주장하지 않으면 대우가 개선되기 어렵다’고 답했고 91.9%가 ‘회사 내의 기업주, 경영자와 자신이 이해관계가 다르다’고 응답하는 등 노사관계에 대한 의식은 지난 1987년 이후 자본가 논리, 노사협조주의나 가족주의이데올로기로부터 독립하여 급성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한겨레신문」, 1990년 2월 28일자).

소속단체에 따른 노동자의식차이

	서노협	노총
① 좌경세력이 축결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47.5% (반대)	25.2% (반대)
② 민주·자유 희생하더라도 경제성장 늦춰서는 안돼	71.6% (반대)	57.8% (반대)
③ 경제투쟁 넘어서 새로운 정치질서 수립 투쟁으로 나가야	59.2% (찬성)	36.1% (찬성)

자료 : 연세대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그리고 일반국민의 노사문제 및 임금에 관한 의식도 상당히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 경제기획원 산하의 「국민경제제도연구원」이 1990년 초 한국갤럽에 의뢰,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노사분규 발생의 가장 큰 요인으로서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을 꼽은 사람이 55.0%, '기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가 20.3%를 차지한 반면, '근로자의 지나친 요구와 외부세력의 개입' 때문이라고 느끼는 층은 각각 9.1%, 8.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금인상의 근거로서 39.4%가 물가상승을, 26.7%는 생계비를 꼽은 반면 22.7%가 생산성, 기업의 지불능력은 7.0%에 불과하여 임금인상을 생산성향상 범위 내에서 억제코자 하는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이 국민의 의식과 거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쟁의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여 정부당국이 끊임 없이 주입해 온 '노사분규 → 경제위기(노동자책임론)'도 별로 설득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2부

노동인권 침해상황

제1장

정부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제2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제3장

법적 제도적 탄압

제4장

산업재해

정부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정부정책에 나타난 노동자인권

1990년도의 노동정책은 민주적 노동운동에 대한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되어 있다. 이것은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다소 유연해졌던 6공화국 노동정책과는 기조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즉 6공화국 초기에는 기존의 폭압적이고 물리적인 탄압방식을 외양이라도 바꾸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정부당국은 사업장 내 분규에는 가급적 개입하지 않으면서 '공정한 중재자'의 면모를 보여주고자 애썼다. 노조결성과 쟁의는 비효칙 자유로웠으며 사용자는 이것에 대항하기 위해 사조직인 '구사대'의 폭력을 동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1989년, 1990년에 들어서면 사업장 내 쟁의에 대한 공권력의 개입이 두드러지고 있다. 1989년 말 정부는 '경제위기설'을 들고나오면서 경제위기의 주원인이 바로 노동자의 지나친 요구 때문이라는 노동자책임론을 앞세워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각종 경제지표와 공익광고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데 제 역할을 다했고 이러한 공세에 힘입어 정부당국은 노동운동탄압에서 이제까지와는 달리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1988. 12. 28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
- 1989. 6. 19 경제기획원, 하반기 경제종합대책
- 1989. 10. 27 산업평화조기정착을 위한 관계장관대책회의
- 1989. 12. 23 전국경제단체총협의회 결성
- 1990. 1. 20 산업평화 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

위 일정표는 노동자의 임금인상억제와 쟁의에 대한 강경대응을 골자로 한 정부정책들이 1년 전부터 준비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1990년 노동정책의 특징을 살펴보자.

첫째, 공권력 조기투입(내무), 즉각사법조치, 법정최고형구형(법무), 전노협창립원천봉쇄, 전노협와해 등의 방침에서 알 수 있듯이 물리적 탄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다. 정부당국은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을 포기하고 '적극적 개입자'로서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데 공권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았다.

둘째, 중요한 시기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관계장관대책회의가 열리고 관련부처별로 세부지침을 내놓을 정도로 정권적 차원에서 대응이었다는 점이다. 이제 노동운동도 과거와 같이 경찰서, 치안본부, 내무부, 노동부만의 소관사항이 아니라 경제기획원, 상공부, 법무부가 참여하고 적어도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종합대책회의를 주관하는 전국가적 관심사가 되었다.

이것은 그동안 한국사회 내에서 노동조합운동의 발전으로 노동자의 입지와 발언권이 커지고 있으며 노동조합운동이 한국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또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 단체와 정부가 과거에 누려왔던 일방적 노동통제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공동의 상황인식 아래 공동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1990년 정부의 노동정책은 이제까지와는 달리 이른바 이데올로기

적 특징을 강하게 띠고 있으며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이다. 약 3년간 계속되던 3저호황시대가 끝나고 상대적 침체가 온 것을 마치 '경제위기'가 도래하여 한국의 경제성장이 물거품이 될 것처럼 홍보하여 노동통제의 주요무기로 활용한 것이다.

1989년 말부터 1990년 상반기까지 국민들은 경제관련부처와 정부산하 전문연구기관의 이름으로, 또는 공익광고의 형식으로 귀가 따갑게 되풀이 해 들어야만 했고 이것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투쟁에 치명적인 공격이 된 것은 사실이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임금인상-물가인상·경쟁력 약화-경제위기)는 집요하게 노동자의 이기심과 과도한 요구에 책임을 돌렸으며 그 효과는 치안본부의 강경대응 방침의 발표에 앞서 1990년 입투분위기를 위축시켰다.

정부는 1987년 이전까지 억눌려오기만 했던 '한강의 기적'의 주인공 '산업역군'의 요구가 정당한 것이라는 일반인식을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돌려놓는 데 주력하여 탄압 명분을 확보하는 데 일정한 정도 성공한 듯이 보였다.

한마디로 1990년의 노동정책은 힘(공권력)과 논리(경제위기, 노동자책임론)를 모두 동원하여 정부가 전면에서 지휘한 유례없는 총체적 탄압이었다. 정부정책의 대표사례를 검토해 보면서 이러한 특징이 노동인권을 어떻게 제약하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기로 한다.

1) 전노협 창립을 원천봉쇄

1990년 1월 22일은 누구에게나 기억될 만한 역사적인 날이었다. 노동조합운동사에 일대 전환점이 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의 창립일인 동시에 소위 '3당야합'으로 거대여당(민주자유당)이 출범한 날이기도 한 때문이다.

그러나 민자당 출범이 성대한 대회와 호화로운 파티로 이어졌던 데 반해 전노협창립대회는 숨막히는 경찰봉쇄 속에서 예정지 서울을 수원으로 변경하여 기습적으로 치러질 수밖에 없었고 대회 참가자는



▲ 전노협 창립대회 참석자들을 연행하고 있는 사복체포조

거의 대부분 뒤늦게 출동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물론 전노협이 창립 대회도 치르기 훨씬 전부터 전노협에 대한 탄압방침이 속속 발표되었으며 신문지상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치안본부는 1월 22일 전노협창립대회에 앞서 지역별 관계기관대책회의를 활성화하고 모든 정보경찰을 동원, 22일 창립대회 움직임을 저지하라(1월 15일 시·도경국장에게 보내는 전언통신문 정삼 02654)고 각 시·도경국장에게 지시했다.

경찰은 전노협이 낸 집회신고에 대해 불허방침을 내리고 창립대회를 원천봉쇄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각 시·도경은 다음과 같은 세부방침을 마련했다.

울산경찰서의 경우 현대자동차 노조간부 65명 등 울산지역 노조간부 180명이 대회참가를 위해 20일 상경할 것으로 보고, 경찰정보력을 최대한 동원하고 회사 쪽의 협조를 얻어 상경예상 대의원들을 사전에 연행·격리 시키기로 했다.

또 경기도경도 전노협 창립대회에 참가할 것으로 파악된 「경기남부지역 노동조합연합회」, 「부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성남노동조합총연합회」 소속 노조간부 170명에 대한 명단작성을 끝내고 정보과 소속 경찰들을 동원, 이들에 대한 개별접촉 및 대회참가 포기를 종용하는 작업을 계속중이다. 경기도경도 대회참가를 포기하지 않는 노조간부들은 대회당일 자택에 연금 시키거나 강제연행할 방침이다(「한겨레신문」, 1990년 1월 19일자).

이같은 신문보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당국은 전노협 창립을 공공연히, 그리고 치밀하게 봉쇄하는 데 총력을 동원했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1월 22일 전노협 창립대회는 예정장소인 서울대가 아닌 수원의 성균관대 자연과학 캠퍼스에서 열릴 수밖에 없었다. 대회 참석자는 140여 명으로 당초 예상인원 1,200명(원천봉쇄시 참석예상인원)에 훨씬 못미쳤으며 이는 수도권 일원의 철통 같은 경비망 속에서 대회 장소가 수차례 번복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대회는 수배중인 단병호 전노협창립준비위 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가량 진행되었고 단의장이 전노협 초대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대회가 끝날 무렵 정보를 입수하고 뒤늦게 출동한 경찰 5개 중대가 학교 안으로 진입하여 참석자들을 연행하였다.

이날 창립대회 예정지인 서울대에는 16개 중대가 배치되었고 시내 각 대학도 출입이 통제되었으며 지방에서 올라오는 전노협 대의원들을 막기 위해 주요 역과 버스터미널에도 정·사복 경관이 분산 배치되었다.

어쨌든 노동조합의 전국협의체라는 분명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창립이 이처럼 원천봉쇄되고 마치 테러집단이라도 출현하는 것처럼 경찰에 비상이 걸린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전노협이 표방하고 있는 강령도 역시 민주주의사회의 기본조직이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일반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노협이 “폭력으로 자유민주주의체제를 뒤엎고 민중혁명을 쟁취하려는 불순 정치세력”이기 때문에 와해시켜야 한다고 말해(「한겨레신문」, 1월 19일자) 정부당국은

전노협의 성격을 소위 말하는 반국가단체 정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노협 강령

1. 우리는 주 44시간 노동으로 생활임금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직종, 남녀, 학력간 차별임금을 철폐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쟁취한다.
1. 우리는 해고, 실업의 방지와 실업자에 대한 생활대책 및 취업보장을 위한 고용안정제도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확보를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전국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자본과 권력의 노동운동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노동자와 전민중의 생활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제도의 확립, 무상의 교육과 의료보장제도의 실시, 불평등한 조세제도의 개혁 및 복지재정지출의 확대, 물가안정, 공해방지 등에 대한 제도적 정책적 개선을 쟁취한다.
1. 우리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철폐와 모성보호를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퇴폐적인 외래문화를 척결하고 건강한 민중문화를 확립한다.
1. 우리는 노동자와 전민중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사상의 자유 등 민주적 제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제민주세력과 굳게 연대하여 조국의 민주화, 자주화,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한다.
1. 우리는 세계 노동자들과 유대를 강화하여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전노협이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대중적으로 확산된 민주노조운동이라 부르는 새로운 흐름의 결집체이며 그것이 이제까지 누려오던 자본의 절대적 무조건적 우위를 위협하게 되자,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우위를 연장시켜 보겠다는 것이 정부와 사용자측의 보다 솔직한 의도일

것이다. 정부당국의 전노협 불인정, 창립대회 원천봉쇄, 와해방침 등등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노협의 조직이나 활동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거나 와해시키거나 마비시키지 못한 것은 분명, 새로운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노동자대중의 요구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2) 산업평화조기정착과 임금안정대책회의

1990년 한해 동안의 노동정책, 즉 탄압기조는 바로 1월 20일의 이 대책회의에 모두 담겨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이 회의는 각 부처장관이 모두 참석한 규모의 종합대책회의였고 특히 전노협에 대한 방침은 1년여에 걸쳐 꾸준히 관철되어 왔다.

정부는 1월 20일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산업평화조기정착과 임금안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경제기획원, 노동부, 내무부, 재무부, 상공부, 건설부 등 무려 7개 부처장관이 참석하여 각 부처가 마련한 관련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는 전노협 창립대회의 원천봉쇄와 함께 전노협 자체의 와해를 위한 대책들이 보고되었던바, ① 전노협 핵심인물에 대한 구속 및 사법처리, ② 업무전반에 대한 조사권 발동 및 조합비의 목적의 사용에 대한 고발 및 시정명령, ③ 임금투쟁지침시달 등 제 3자 개입시 5년 이하의 징역 등이 기본지침으로 확인되었고 각 부처별로 다음과 같은 세부사항이 보고되었다.

내무부 전국 71개 공단의 전담대공요원을 현 163명에서 337명으로 대폭 증원한다. 인천, 부천, 울산, 마창지역에 대해서는 치안본부에 전담지도관을 두어 노동현장에 침투한 불순세력을 추적 조사하기로 한다.

노사분규와 관련 회사측의 고소·고발이 있을 경우 구속수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즉각 사전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하고 불구속 수사대상자는 출석요구서 발부절차 없이 임의동행형식으로 연행조사한다.

법무부 분규현장에서의 인명살상, 폭력혁명선동 위험물 사용자에 대해

서는 엄중처벌한다. 불법·폭력분규 주동자는 즉각적으로 사법조치하거나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기동검거조를 투입, 끝까지 추적검거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노동부 전노협의 불법활동에 대해 강력한 법적조치를 해 제3자개입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조치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업무조사권을 발동,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를 2월 한 달간 일제히 실시한다.

재무·상공부 자체요인으로 노사분규발생업체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금을 배제하되 무노동·무임금원칙 및 경영·인사권 등을 준수하려다 분규에 휘말린 업체에 대해서는 긴급운용자금을 우선 융자하는 등 지원사업을 펴 예정(「동아일보」 1월 20일자).

이 대책회의의 방침을 보면 전노협에 대한 철저하고 치밀한 고사작전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각 부처가 총동원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즉각적 사법조치, 끝까지 추적, 법정 최고형 등 강경일변도의 방침과 함께 업무조사권, 제3자 개입금지 등 노동조합법상의 악법조항들을 활용하여 노동 3권을 제한하고 위축시키고 있다.

특히 쟁의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제 개별사업장의 단체교섭에까지 정부가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 11월 국회감사 자료에 따르면 쟁의 사업장에 따른 지원 세제상의 특별조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임금체불 및 부도발생에 대비한 긴급운영자금 대출 : 22건, 22억 5천만원
- 노사분규로 인한 수출중단시 무역금융 특례지원 : 6건, 18억 3천 1백만원
- 노사분규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사업이 중대위기에 처한 기업에 대한 관세 납기연장 : 204건, 33억 9천 2백만 원 · 내국세 납기연장 : 40건, 119억 7백만 원 · 징수유예 : 18건, 84억 4천 6백만 원

3) 불법쟁의 판단기준

1990년 1월 20일, 노동부는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쟁의의 합법 여부를 가리는 판단기준으로서 적법 쟁의의 범위를 한껏 축소시켜 사용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편, 노조간부들을 사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판단기준'에 대하여 노동계와 법조계에서는 일제히 반박이 제기되었다. 노동부가 제시하고 있는 기준이 기왕의 노사관행이나 현행노동관계법에 맞지 않음 뿐더러 기업주의 부당노동행위와 교섭기피 등을 만연케 할 우려가 다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지로 이러한 지침에 의해 적법쟁의의 범위가 현저히 축소되자 사용자들은 교섭을 진행시키기보다는 쟁의행위에서 꼬투리를 잡아 노조간부를 고소·고발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노사관계 준법질서 확립을 위한 판단기준에 따른 불법쟁의

- 정치파업, 연대파업, 구속자석방, 전노협을 상급단체로 인정요구하는 파업
- 파업기간 동안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
- 경영합리화, 사업장이전, 기구개편, 경영진 임면, 직원의 배치전환 등 인사경영권에 노조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단체협약도 쟁의이유가 될 수 없다.
- 가족 등 외부인이 응원하는 쟁의
- 노조가 없는 사업장의 쟁의
- 준법투쟁도 쟁의행위이므로 정당한 절차로 거치지 않는 한 불법이다.
- 유니온샷 체결, 노조경비지급, 재교섭, 보충협약체결을 요구하는 쟁의도 할 수 없다.
- 전노협이 산하노조로부터 창립기금을 걷는 것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위반이며 조합활동에 관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제3자 개입금지조항

위반이다.

노동부는 이것을 '노동 3권의 행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교육자료로 만들어 배포했는데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노동부는 이것이 시행령도 아니고 노동부 지침도 아닌 교육자료라고 변명하였다.

위 기준들이 헌법 제 33 조에서 보장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한하는 것이며 노동 3권 보장의 근본원칙에도 벗어나 있는데 노동부가 법률에 의거하지 않고도 이러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은 극히 부당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가족이 응원하는 쟁의, 준법투쟁 등 그 어느 것도 일찍부터 노동자의 쟁의에 반드시 따라다니는 것이 상례였으며 인사·경영권의 문제 또한 노동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로서 전적으로 사용자의 권한만은 아니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만큼 이 모두를 불법파업으로 보는 것은 커다란 무리가 있다.

무노동·무임금 요구만 하더라도 그것이 법에 규정된 것이 아닌 만큼 노사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영역이 분명하다. 전노협이 산하노조들에 내리는 지침도 역시 경단협이 내놓은 단체교섭지침(1990년 1월 23일)이나 임금인상 가이드라인 7% 제시(1월 24일)와 마찬가지로 노동조합측에만 제 3자개입 금지법이 적용되는 것도 형평을 잃은 해석이다.

어쨌든 노동부가 교육자료라는 이름으로 사용자를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노동 3권을 크게 제약하는 법해석 기준을 내놓은 것 자체가 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정책의 향방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짐작케 하는 처사이다.

4) 업무조사와 전노협 탈퇴압력

전노협 창립 직전 '1·20 산업평화와 임금안정대책'에서 노동부가 전노협 와해를 위해 '업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발표한 후 곧바로 2월 한달 동안 130여 개 노조를 선정, 노동조합 업무조사에 착수했다.

업무조사 대상노조는 서울 31개, 인천 4개, 경기남부 17개, 울산 4개,

마창 17개, 대구 15개 등 수도권과 울산, 마창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몇 개를 제외한 대다수 노조가 전노협 가입노조로서 이 중 73개가 업무조사에 따른 서류제출을 거부하였다.

노동부가 전노협 와해를 목적으로 발동시킨 업무조사권의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법 제 30 조 1(자료의 제출) 행정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노동조합의 경리상황,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케 하여 조사할 수 있음.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 9 조 2(행정관청의 조사) 법 30 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진정 등이 있는 경우, 조직분규가 있는 경우, 회계상황 등에 지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행함.

이 조항 자체도 노조의 자율적 활동과 운영에 대한 행정관청의 지나친 개입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 하여 노동법 개정운동 때마다 줄기차게 삭제되어야 할 악법조항으로 지적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업무조사는 목적이 전노협 와해에 있었고 실제 대구지방노동청을 비롯한 행정당국이 개별노조에게 전노협을 탈퇴하면 업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회유하여 행정권의 남용이라는 항의가 광범위하게 대두되었다.

이러한 업무조사에 대해 전노협측은 행정관청의 부당한 개입은 노조활동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며 업무조사의 목적이 전노협 와해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업무조사대상 노조 중 73개 노조가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비 사용내역을 공개하고 업무조사의 부당성을 폭로하면서 업무조사거부를 결의하였다. 이와 함께 자료제출 사유를 설명해 달라는 공문을 행정관청에 보냈다. 행정관청은 '사무실로 쳐들어가겠다' '위원장을 구속하겠다'는 몇 차례의 협박 끝에 50개 노조를 고발하였다(업무조사 불응시는 3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노동조합법 제 47 조 및 49 조).

그러나 실제로는 업무조사거부에 관한 처벌규정이 극히 미미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행정관청은 삼성제약노조나 한양대병원노조의 경우처럼 업무조사 불응과 함께 과거 활동사실 중 제3자개입 금지 적용사항을 끄집어내어 병합적용시킨 사례가 많다.

사례 1 삼성제약

업무조사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10개월 전 조선무약노조 농성장 방문사실을 제3자개입 혐의로 추가 구속하였다. 구속자는 김은임(34세, 여) 위원장과 김영순(31세, 여) 부위원장.

3월 12일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서울지검 동부지청의 지휘를 받아 삼성제약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색영장에 명시된 규약·출납장부 및 증빙서류, 기타 노조활동관련서류 외에도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조합원 및 가족명의로 예금통장을 압수했다가 조합원들의 항의에도 이렇듯하지 않고 21일이 지난 후에야 돌려주었다(「한겨레신문」 4월 5일자).

사례 2 한양대병원 노조

한양대병원 노조 차수련(31세, 여) 위원장은 자료제출을 거부하자 1월중 서울대병원 노조 농성장을 방문, 격려연설을 했다는 혐의로 제3자개입 혐의를 추가하여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밖에 업무조사 거부로 고발당한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다.

인천 : 경일화학(인노협 수석부의장), 대흥기계(인노협 부의장), 명성전자 (인노협 사무처장)

대구 : 남선물산, 대하염공, 경북대직원노조

광주 : 금성 알프스, 대우 캐리어

마산·창원 : (주)통일, 대림자동차, 한국웨스트전기

양산 : 대우정밀 등.

위 명단을 보면 전노협 산하 지역노동조합협의회의 핵심노조들이 대부

분 고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반기에도 업무조사는 계속되어 8월에 전국 13개 노조가, 그리고 11월에는 서울과 마산·창원지역의 핵심적 민주노조가 업무조사 통고를 받고 거부하였다. 1990년 11월 노동부 국정감사 보고에 따르면 1990년도에는 총 215개 노조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고 73개 노조가 이를 거부하였다.

5) 노동부지침과 경단협지침

1990년 정부당국의 노동정책이 1987년 이후의 '공정한 중재자'의 역할에서 180도 전환하여 '정부의 적극개입'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더구나 세부적인 지침을 볼 때 정부의 '적극 개입'이 실은 사용자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심증은 더욱 굳어진다. 노동부는 1990년 한해 동안 이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낸 것으로 평가된다.

임금동결에 대하여

노동부	경단협
1989. 12. 3급 이상 공무원 봉급동결 정부주도 아래 임금억제 방침 발표	1990. 2. 경총 '90 임금조정 에 관한 권고—평균임금 인상율을 생산성향상 예정치인 7% 범위 이내 로
1990. 1. '90 임금교섭 지도지침 2. 임금교섭 선도업체 123사 선정 중점관리, 인상율 7% 억제유도, 최영철 장관 "생산성 초과하는 임금인상 업체에 대하여 정부에서 인하토록 적극 개입"	

사용자 단체의 지침 또는 대정부건의와 정부당국의 지침이 각 사안별로 어떻게 긴밀히 협조하면서 하나로 통일되고 있는지 위의 비교표를 보자.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부는 임금동결정책을 주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인상의 논리적 근거에서도 노동계나 학계에서 주장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또는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치 않고 사용자단체가 주장하는 생산성 향상치를 채택하고 있다.

무노동 무임금에 대하여

노동부	경단협
1989. 10. 법제화·관행화 방침 1990. 1. 전국기관장회의 지시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의무없음 · 태업기간에는 생산량감소율만큼 감액 · 파업기간중 임금지급 요구하는 쟁의행위는 불법 · 상공부—인사·경영권, 무노동 무임금 고수로 분류에 휘말린 업체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우선용자 방침 · 상공부—어린 기업에 대한 어음유통, 원부자재 공급, 특별외화 대출, 정책자금지원, 각종 세제상 혜택 중단키로	1989. 12. 무노동 무임금 위반업체에 대하여 원자재 공급중단, 어음유통 거부 등으로 규제하고 정부도 금융·세제상의 혜택주지 말아야 1990. 3. 무노동 무임금에 대한 지침 회원사에 시달

노동부가 1989년 사용자단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무노동·무임금을 법제화하려다 노동계의 강력한 반대로 실패하자 다시금 재정적인 규제와 지원책을 무기로 하여 무노동 무임금을 관행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 있다. 더구나 파업기간중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쟁의가 불법쟁의라고 못박은 것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는 행정권의 남용과 지나친 간섭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경영권의 문제 역시 법적 근거없이 불법화시켜 노조의 쟁의권을 현저히 축소시켰다. 노동부는 경영자들의 권리(?)수호를 위해 가장 적극적인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인사·경영권참여요구 단협대상서 제외

노동부	경단협
1989. 12. 경영·인사권 이유 쟁의신고서 접수치 말 것. 이를 이유로 쟁의에 돌입할 경우 불법쟁의로 고발할 방침	1989. 11. 경제6단체장 긴급기자회견, 무노동 무임금 및 인사경영권 수호 선언
1990. 1. 경영합리화, 공장이전 등에 대한 노조동의 요구는 쟁의대상이 될 수 없다. 상공부—사용자 이행여부 중점지도	1990. 1. 지나친 인사권참여 절대 불인정, 조반장 직선제, 전출·전입시 동의요구 절대 불인정 ('90 단협체결지침)

사례 인천 '한국메그론노조'

1990년 7월 20일 인천 서구청은 한국메그론노조에 대하여 단체협약이 인사·경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경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① 조합원 징계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할 것, ② 조합원 승진시 조합원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임명할 것 등인데 노사자율적인 교섭에 의하여 체결된 이 협약이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사항이라 하여 이를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

노동조합법 3조 4호에 적시되어 있는 사항을 무시하고 또 이전에 노동부가 냈던 지침을 다시 번복하여 해고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을 부인한 것은 명백히 노조활동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사용자들은 노조간부를 해고하고 이들이 불복하여 노조활동을 계속할 경우 제3자개입 금지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식의 상투적 탄압을 가하고 있으며 노동부 또한 부당해고를 당한 노조위원장이 소집한 임시총회나 쟁의발생신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상에서 노동부지침과 경단협지침을 비교해 본 결과 노동정책이 공정하다거나 합리적 중재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그대로

노조 전임자 급료에 관하여

노동부	경단협
1988. 12. 전임자 급료 50%만 지급 조합비 일괄징수→개별징수로	1990. 1. 노조전임자수 최소화 조합활동비 지원금지

해고 노동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노동부	비고
1988. 12. 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자는 그 다툼이 끝날 때까지 조합원 자격 유지	1990. 11. 대법원 판결 해고효력 다투는 사람은 제3자가 아니라는 최종 확정판결 나옴.
1989. 11. 노동조합업무처리지침 보완—해고효력 다투고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일단 단절된 것으로 근로자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반영하여,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들의 요구를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의 노동정책이 이렇게 편파적이고 설득력이 없을 때에 이러한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대안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도 하다.

2. 공권력 투입 강제진압

1990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7월 7일, 내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쟁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5분의 1로 감소했으나 경찰투입은 오히려 2배(10회→23회)로 증가했다(「한겨레신문」, 1990년 7월 8일자).

또 최루탄 사용량은 1990년 5월 말까지 1989년 한해 동안의 총사용량을 이미 사용해 버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명실공히 6공화국 이래 최대의

무력사용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같은 무력사용은 「1·20 산업평화 조기 정착과 임금안정대책」에서 강조되었듯이 ‘불법단체’ ‘불법분규’에 대한 최대한의 경찰투입이란 방침이 그대로 실현된 것으로서 각종 집회와 적법파업 사업장에 무차별로 적용되어 경찰력 남용과 노동 3권의 침해라는 비난의 소리가 드높았다.

실제로 이러한 무력사용은 사용자의 입지를 최대한 강화시켜 쟁의사업장에서 회사측은 아예 교섭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준법투쟁단계부터 노조 간부 구속이라는 정해진 수순을 밟음으로써 산업평화의 결정적 장애물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방침을 고수하였고 임금인상투쟁의 고비를 넘긴 6월 1일 안응모 내무장관은 이북 5도청에서 열린 ‘국민과의 대화’ 석상에서 “사회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학원·노동현장은 물론, 언론사에도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앞으로는 시위장소나 대상에 성역을 두지 않고 체제전복세력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해 공권력투입 남용의 우려를 더욱 깊게 했으며, 앞으로 정부차원의 대응양식이 변함없으리란 것을 시사했다.

1) 적법파업에 대한 강제진압

경찰의 공권력투입방침은 정부당국이 말하는 ‘불법쟁의’뿐만 아니라 ‘적법쟁의’에도 구별없이 적용되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크게 침해하였다.

사례 1 한국야쿠르트유업

5월 13일 (주)한국야쿠르트유업(대표 이은선) 평택공장에 경찰병력 200명이 투입되어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농성중이던 조합원 31명을 강제연행하고 시위용품을 압수했다.



▲ 6공화국 노동운동 탄압의 실상을 보여준다.(대한광학노동조합 탄압사진)

사례 2 (주)유성기업

5월 11일, 부천의 자동차 부품업체인 유성기업(대표 유홍우)에 경찰 500여 명을 투입, 농성중인 노조원 153명을 강제연행했다. 유성기업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냉각기간을 거쳐 파업에 돌입했으며 파업 3일 만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이다.

사례 3 부천 세라아트, 세진통신, 동릉상사

6월 8일 새벽, 합법절차를 거친 파업에 경찰이 난입하여 세라아트에서 66명, 세진통신에서 16명을 각각 연행하였다.

사례 4 대구 남선물산

오랜 골똥농성으로 기억되는 대구 남선물산은 8월 31일 강제해산되기까지 모두 6차례에 걸친 공권력 투입이 있었다.

그동안 연인원 300명이 연행되었고 5명의 지도부가 구속되었으나 25차까지 진행된 단체교섭에서 회사측은 줄곧 7% 임금인상을 고수하였다.

8월 31일(파업 103일째) 강제진압과정은 채한수 위원장직무대행이 아침 조회를 위해 골똥에서 내려온 틈을 타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담을 넘어들어왔고 쇠파이프와 주먹으로 강제진압했다. 이때 배성자(19세, 여)가 지도부의 연행을 막으려고 기숙사 2층에서 투신, 양쪽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다.

사례 5 인천 대우정밀

5월 10일 새벽, 인천 대우정밀에 150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는데 이들은 날이 20cm나 되는 도끼를 휘두르고 가스총을 발사하면서 19명의 노동자를 연행했다. 경찰은 농성장에 들어오면서 50여 명이 있는 공간에 최루탄 10여 개를 던져넣는 잔인함을 보여주기도 했다.

연행된 19명의 노동자들은 즉심에서 벌금 3천 원씩을 물고 석방되었는데 대우정밀노조는 교섭 시작 후 7차교섭에 이르기까지 단 1원의 인상도 허용할 수 없다는 회사측의 일방적인 태도에 쟁의발생신고를 낸 후 냉각기간을 거쳐 파업에 돌입했다.

사례 6 대한교육보험

3월 29일 임금교섭을 시작한 이후 16차례에 걸쳐 임금·단체협약을 놓고 회사측과 교섭을 벌여오던 노동조합은 5월 24일부터 서울 본사에서 파업에 돌입했다. 6월 1일 파업농성 8일째 경찰이 투입되어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된 7명의 노조간부들뿐 아니라 농성자 250명 전원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대한교육보험노조는 단체협약에서 '인사제도개선'을 요구했는데 회사측이 신규사원을 대량채용한 뒤 보험계약 목표량을 과증하게 부담시켜 탈락을 유도하는 식으로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유지해 오던 것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교육보험 파업농성에 대한 경찰투입 이후 조합원 1,000여 명은 평민당사로 자리를 옮겨 공권력투입과 전원연행을 규탄하는 농성을 계속하였다.

사례 7 풍산금속

풍산금속은 5공화국 당시 일해재단에 정치차금 40억 원을 헌납했다 하여 청문회에 등장한 적이 있는 풍산그룹 산하기업인데 포탄을 만드는 방산업체로서 산재(폭발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1989년 초에는 대통령 특별담화에 따라 신정연휴기간 동안 4,000명의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대규모 공권력투입의 첫 적용예로 기억되기도 한다.

바로 이 풍산금속 동래공장이 근무형태를 주전 2교대로 바꿈으로써 노동자들의 생활리듬을 파괴하고 실질수령 임금액 약 10만 원이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게다가 2교대 근무조로 인한 조합원 분리작전도 있다고 판단한 조합원들은 9월 8일부터 작업을 중단하고 파업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쟁의 역시 대규모 경찰 진압작전으로 해결했다. 파업 나흘째인 9월 11일 새벽 2,300명의 경찰병력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격렬하게 저항하는 조합원들을 해산시키고 300명을 연행하였다.

2) 112 신고로 경찰투입

1990년 1월 17일 정부는 '악성노사분규에 대한 경찰력 투입대책'을 확정하여 대책반은 기업주의 112 신고만으로도 쟁의현장에 출동하여 불법행위자는 강제연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112 신고는 보통 강력범죄행위에 대한 긴급전화신고번호로서 기본적으로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할 노동쟁의가 강력범죄에 해당된다는 위의 '투입대책'의 발상과 전제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사례 1 (주)대한광학

112 신고방침에 따른 첫 희생자는 서울 구로공단의 (주)대한광학 농성장이었다. (주)대한광학의 노조원들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창원으로의 공장이전 계획을 발표하자 항의농성에 돌입했는데, 당시 회사측이 창원공장으로 출근하라고 통고한 2월 1일에도 창원 공장부지에는 공장 대신 모래 한

차와 팻말 하나가 있을 뿐, 일자리와 주거대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조합원들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태에서의 이전계획통고는 실상 노조원들에 대한 집단해고와 다름이 없었다.

2월 1일, 농성자들이 공장설비를 창원으로 옮기려는 화물차 8대의 출입을 막자 회사측은 곧바로 남부서에 112 전화신고를 했다.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노동자 92명을 "현행범 연행과 노사분규 조기수습이란 차원에서" 연행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연행된 노조원 중 최홍주 사무장(26세, 남) 등 9명을 업무방해로 고소하여 이 중 3명이 구속되었다.

사례 2 (주)도드웰 한국지사

112 신고와 경찰출동이 사무직 노동자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영국계 수출 알선업체인 (주)도드웰 한국지사(지점장 : 패트릭 에드워드, 45세)의 노동조합(위원장 최찬규, 31세)은 회사가 경영부진에 따른 기구축소를 이유로 노조원 9명에게 해고를 통보하자 이에 항의하여 2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월 21일, 파업 3일 만에 회사측의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농성중이던 19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고 이 중 2명이 불구속입건, 17명은 훈방조치되었다.

3) 무력진압과 투쟁의 확산

(1) 현대중공업

1990년의 최대규모 경찰투입 쟁의사례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울산의 현대중공업이다. '미포만 작전'이란 이름으로 육·해·공 합동작전을 펼쳐 파업농성을 진압하는 데 무려 18,000명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이 작전을 지휘하기 위해 치안본부에서 여관구 제2차장과 지휘부 요원 10여 명이 파견되었다. 군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 강제진압을 위해 경찰은 파업돌입 다음날 양산경찰서에 집결하여 작전회의와 도상 연습까지 마쳤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는 총리 이하 관계장관이 참석한 '긴급노사관계장관

회의'가 열려 현대중공업 농성에 대한 '조기 공권력투입과 주모자 전원구속'이란 방침을 재확인했고 파업 나흘째인 4월 28일 새벽 6시 미포만 작전은 개시되었다.

현대중공업의 파업에 대한 이러한 전면적인 무력진압은 1989년 파업의 강제진압작전이 거의 그대로 재현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그 파급효과로서 울산의 현대계열사가 연대파업에 돌입하는 양상도 되풀이되었다.

1990년 4월 29일 새벽, 현대중공업에 경찰이 투입되어 강제진압에 들어가자 곧바로 현대자동차 노동자 2만여 명이 작업을 거부하고 공장앞 가도에 나와 연좌농성을 벌이며 현대중공업으로 투입되는 경찰의 진행을 3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곧이어 현대중전기, 종합목재 등 9개 현대그룹계열사가 무력진압에 항의하는 연대파업을 선언하고 조업을 중단했다.

한편 농성진압작전을 피하여 울산시내로 들어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과 이에 동조하는 노동자들은 연일 산발적으로 계속되는 시위에 가담하였고 현중조합의 파업지도부 약 300명은 폴리앗크레인으로 불리는 높이 80m의 철근 위로 피신, 장기농성에 들어갔다.

4월 28일 강제진압작전 이후 5월 10일 폴리앗크레인 위에서 이갑용 비상대책 위원장을 비롯한 파업지도부가 내려오기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강제무력진압은 전국민적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마침 5월 1일 메이데이를 전후하여 임금인상투쟁의 열기가 높아진 데다가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산하소속노조들이 참여하는 전국 총파업을 선언하며 현중파업에 대한 공권력 개입과 무력진압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리하여 5월 3~4일 양일간 전노협의 주도 아래 총 18개 노조 13,000명(노동부 집계)이 연대파업에 동참하였다.

한편 공권력의 무력진압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살펴보자.

5월 1일 진압작전 이후 나흘째 되는 날에도 8천 명이 울산 동구일대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시위과정에서 김용우(32세, 현중선행도장부) 등 노동자 30여 명이 경찰 곤봉으로 온몸을 맞아 전신타박상을 입었으며, 또 시위 도중 이갑연(41세, 현중시운전부)이 경찰의 연행을 피하려다 2층 아래로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기도 했다.



▲ 울산 현대중공업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투입된 경찰이 거리에서 노동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한편 폴리앗농성자들은 현중에 투입된 경찰병력의 철수, 고소·고발취하를 요구조건으로 내걸고 5월 10일까지 80m 고공에서 농성을 계속했으며, 식수가 바다나자 빗물과 생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낮의 기온차로 인한 감기와 설사에 시달렸다. 이들이 폴리앗크레인을 내려올 즈음에는 거의 탈진된 상태여서 동료들의 부축을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현중사태로 인한 구속자총수는 131명에 달하여 단일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구속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2) KBS 방송사 경찰투입

1990년 4월 12일 방송사상 처음으로(군사계엄 때를 제외하면) KBS 방송국에 경찰이 투입되었다. 이로써 KBS 전사원이 제작거부에 들어가 5월 18일 방송이 재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정상적인 방송이 이루어지지 못했

으며 MBC와 CBS가 시한부 제작거부에 들어가 방송민주화를 위한 언론노동조합들의 연대투쟁으로 확산되기도 했다.

KBS 공권력 투입 배경 2월 말 KBS에 대한 특별감사가 실시되어 당시 사장이던 서영훈씨가 공금을 유용하여 임금지급을 했고 직원들은 단체협약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수당을 받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언론보도는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성격이 짙었는데, 곧이은 서영훈 사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했다.

즉 노동조합과 방송민주화에 대해 비교적 호의적인 서영훈씨를 감사결과를 빌미로 사퇴시키고 제5공화국 시절 청와대 대변인, 서울신문사장 등을 지낸 친여권인사 서기원 현 KBS사장을 후임으로 지명하겠다는 의도가 엿보였다.

결국 이러한 정부측 의도는 국회조사에서 서영훈 사장이 최병렬 공보처 장관으로부터 “사퇴 안하면 감사원에서 고발할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조합원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마침내 4월 8일 서영훈 사장의 사표가 수리되었고 노동조합은 ‘KBS 자주권수호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관제사상거부서명작업’에 돌입하는 한편 후임인 서기원 사장의 임명을 거부하는 뜻에서 이사장실을 폐쇄하였다.

전격적인 경찰투입 4월 9일자로 노태우 대통령이 임명한 서기원 사장이 출근하려 했으나 KBS사원들의 강력한 반대와 실력저지로 번번이 실패하였다. 4월 12일 서기원 사장이 청원경찰·간부사원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주차장을 통해 잠입 출근하자, KBS사원들은 즉각 사장실 앞에서 농성에 돌입하였고 서기원 사장의 지시로 간부사원 100여 명이 사장실 앞에서 연좌하며 대치하였다. 이날 서기원 사장은 직접 핸드마이크를 들고 진두지휘를 했으며 곧바로 경찰투입을 요청했다.

이 요청에 따라 4월 12일 12시경 KBS에 500명의 경찰이 난입했고 농성자 117명이 연행되었다. 이에 조합원들은 즉각 ‘공권력투입 규탄 비상총회’를 열고 기획실을 필두로 제작거부를 결의해 4시간도 못되어 전사원이 제작거부를 결의했다.

KBS 제작거부 결의 의미 계엄상황을 제외하고는 유례없는 경찰의 방송

사 난입에 대하여, 더구나 민주화를 노상 부르짖는 제6공화국의 이러한 방송사 탄압에 대하여 KBS사원들은 ‘독재정권의 폭거’라고 규정하였다. KBS사원들은 방송사에 대한 경찰투입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동인식 하기에 이르렀고, 제6공화국의 장기집권을 위해 방송을 재장악하기 위한 음모가 결국은 경찰투입이라는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방송민주화, 정권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라는 대의는 널리 온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KBS 제작거부기간 동안 KBS농성장에는 일반 시민, 노동조합, 재야인사들의 격려·지지 방문이 끊이지 않았으며, ‘걷기 대회’ 등에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열기를 높이기도 했다.

이러한 전반적인 분위기에 힘입어 KBS 이사 중 1명인 한운사 이사는 KBS 농성장을 찾아와 이사회에서 신임 서기원 사장에 대한 표결이 토론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 표결을 앞두고 이사 개인에 대한 압력이 들어온 점 등 절차가 극히 강압적이고 비민주적이었다는 것을 밝히는 양심선언을 했다.

2차 공권력 투입 KBS 제작거부가 계속되고 일반여론의 추이가 제작거부에 비교적 호의적이고 울산 현대중공업의 파업돌입으로 최대언론사와 최대규모 산업현장에서의 동시파업이 전체 임투전선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끼칠 것이 예상되자 정부는 공권력재투입을 강력히 시사했다. 그러자 KBS 이사회는 ‘선정상화 방안’을 제시했고 4월 30일 이는 조합원 총회에서 부결되었다. 이날 다시 3천 명의 백골단이 KBS에 난입하여 333명을 연행함으로써 현대중공업에 이어 주요사업장에 대한 경찰투입과 주도자 구속이라는 초강경방침을 관철시켰다.

이후 5월 18일부터 KBS사원들이 방송제작으로써 민주화운동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 아래 제작에 복귀한 후에도 7월 25일경까지 KBS방송사에는 3개 중대 400여 명의 경찰이 상주해, 단위사업장 최장기 경찰상주 기록을 세웠다. 경찰의 장기상주에 따라 KBS사원과 경찰 간의 마찰이 일어나 KBS사원이 폭행당하는 사태가 자주 일어났다. 5월 10일 집단구타를 당한 사원 최은(30세, 영상제작과)의 고막이 터졌고 6월 7일은 김원곤

(영상제작 1부)이 집단구타를 당하고 6월 12일 이금보조합원(라디오국 PD)이 전경에게 방패로 이마를 10cm 찢겼다.

KBS 파업투쟁 후 구속자 4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한 달이 넘게 계속된 KBS의 제작거부 투쟁에서 KBS노조는 첫 공권력 투입 당시 11명, 2차 공권력 투입 당시 333명의 조합원이 연행되었고 이 중 17명이 구속되고 7명이 수배되었다.

검찰은 이 중 안동수 위원장(42세), 이임호 노조공정방송추진위간사(40세) 등 노조간부 10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7명은 구속취소결정을 내려 석방했다.

구속자명단 : 안동수, 이임호, 이경희(32세, 여, 여성국장), 전영일(38세, 조직국장), 고범중(42세, 사무처장), 최창훈(42세, 노사국장), 김영달(32세, 무임소국장), 김만석(29세, 보도국기자), 안덕상, 이형모

4) 걷기대회 영화상영까지도 방해

사례 1 전교조 '걷기대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결성 1주년을 맞이하여 1990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참교육 실현을 위한 온나라 걷기' 행사에 대하여 경찰이 별다른 법적용 없이 참가자들을 연일 무더기로 연행하였다.

이 '걷기운동'은 4월 1일부터 5월 27일까지 56박 57일 동안 15개 시·도, 140여 시·군·구 전교조 지부·지회를 빠짐없이 경유, 총 3,250리를 기본대원 5명(대장 장용수, 30세, 전월계중교사)과 이에 합세하는 각 지역 해직교사, 시민들이 평화적으로 걷기운동을 벌이는 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경찰은 행사 6일째가 되는 4월 7일까지 총 106명을 연행하고 48시간 안에 풀어주는 방식으로 불법연행을 되풀이하였다. 4월 7일에는 광주지부에서 해직교사 9명이 연행되었다가 다음날 풀려나 서장 면담을 요구했다 하여 경찰이 다시 보호실에 감금한 뒤 전경버스에 태워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일대의 인적드문 곳에서 한 명씩 끌어내 물구덩이와 물고랑



▲ 영화 '파업전야' 상영을 막기 위해 전남대에 투입된 전투경찰

에 밀어넣는 폭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제주에서 출발하여 전남 광주, 경남 부산, 경주 등을 거치는 동안 평화적인 걷기대회는 경찰의 불법연행과 폭행으로 얼룩졌고 충북, 전북, 강원도에서는 연행은 하지 않고 방해만 하는 방식을 취하다가 안양, 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다시 연행을 시작하여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지탄하는 소리가 높았다.

특히 부천 성심여대에서는 사복경찰 300명이 걷기대원들을 환영하는 대회장에 난입하여 깃발을 빼앗아 불태우고 참가자들을 폭행, 불법연행하였다.

사례 2 '파업전야' 상영수난

영화모임 '장산꽃매'가 전노협 원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영화 '파업전야'가 상영 첫날인 4월 6일부터 공권력투입으로 상영이 중단되는 수난을 겪었다. '파업전야'는 16mm의 소형영화로서 금속공장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가는 과정을 영화화한 것으로서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제작되었으며 검찰은 일찌감치 이 영화의 상영과 관련하여 의법조치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은 '파업전야'를 상영하던 각 상영장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필름과 영사기구를 압수했으며 상영관계자와 관객을 연행했고 제작자인 장산꽃매의 대표를 수배하는 한편, 상영극장을 공연법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4월 13일에는 광주 전남대에서 '파업전야'의 상영을 막기 위해 헬기까지 동원되었으며 유석(28세, 전남대 행정학과)이 학교 안으로 난입하는 경찰의 최루탄 직격탄을 맞아 턱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다.

5) 무력진압 맞선 노동자 분신

1990년 한해도 우리 기억에 남는 몇 건의 분신투쟁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안산 금강공업의 노동자 집단분신사건은 공권력의 무리한 진압과정에서 일어난 참극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충격을 던져주었다.

금강공업(주)는 반월공단에 위치한 건축자재 생산업체로서 소음과 산재 위험이 가득한 열악한 조건의 사업장이다. 이곳 노동자들은 토요일을 제외한 거의 매일을 반강제적 잔업에 시달려오다가 1990년 8월 10일 종업원 150명 중 104명이 모여 노조를 결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회사측은 조합원들에게 탈퇴협박을 하는 한편 단체교섭도 무시하고 실질적인 대표자를 내보내지 않았다.

2, 3차 교섭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4차 교섭을 약속해 놓은 상태에서 회사측은 갑자기 기계와 원자재를 트럭에 실어 바깥으로 빼돌리기 시작했다(8월 29일, 오후 9시).

이를 알아챈 노동조합원들이 비상연락망을 통하여 긴급히 회사정문 앞에 모여서 연좌농성을 시작하였다. 회사측은 무기한 휴업공고를 했으며 안산경찰서 정보과 형사는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는 협박을 남기고 돌아갔다.

노조를 결성한 지 20일도 못되어 회사측으로부터 기만당하고 직장마저

빼앗기게 된 금강공업노동자들은 작업장을 지키며 투쟁의지를 가다듬었다. 그러나 농성을 시작한 지 불과 40시간 만에 어김없이 공권력이 투입되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간부가 고소되었다는 것이 빌미였으나 농성의 원인과 책임에 상관없는 강제진압이 시작된 것이다.

8월 30일 오후 4시경 정문 앞에 조합원과 가족 60여 명이 농성하고 있는 주위를 차량 2대의 경찰병력이 에워싸고 포위망을 좁히기 시작했다. 이때 박성호 부위원장이 시너를 몸에 들이붙고 "더이상 가까이 오면 분신하겠다!"고 경고했고 원태조 후생복지부장도 위급한 상황에 몸을 시너로 적시고 대비하였다.

이때 경찰 책임자가 손에 라이터를 든 박부위원장에게 달려들어 보기도 위험천만한 실랑이가 벌어졌다. 순식간에 '펑' 하는 폭발음과 함께 불길의 박성호, 원태조, 정만교(조합원) 등을 휘감았고 경찰은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한편 다른 조합원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옮겨진 이들 분신노동자들은 각각 9월 11일(박성호), 9월 18일(원태조)에 고통스런 숨을 거두었다.

결코 낮설지 않은, 1986년 봄(박영진)에도 1989년 봄(최윤범, 성완희)에도 되풀이되었던 이러한 노동자 분신사건이 항상 전근대적 노조탄압과 공권력의 강제진압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해야 할 일이다. 생명을 내던지는 극한적 분신투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일부 언론보도처럼 우발적 충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노동자를 사지로 내몰고 있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사용자의 전근대적이고 치졸한 노조탄압과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면 된다는 정부 당국의 노동정책이 귀중한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범이란 것을 안산의 금강공업사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

인간적인 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노동자들 앞을 가로막는 거대한 공권력의 힘, 노동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그 힘이 노동자들을 분신투쟁이라는 벼랑으로 몰고 있는 것이다.

지역·업종분류에 따른 구속자수

지역·업종	구속	수배	고소·고발
서울	27	1	46
인천	74	6	10
부천	15	1	
성남	11		15
경기	15	1	1
대전	2	1	
광주	5		14
전북	4		
마창	81	26	20
부산	4	1	
대구	18	3	46
포항	12	2	18
거제	4		
태백	4		
울산	53	50	20
진주		2	
구미	3	1	
민출노협			4
전교조	8	1	
언노련	17	31	
병노련	1		30
계	358	127	224

* 수배와 고소·고발은 전체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함.
(전노협 조사, 1990년 5월 31일 현재)

1) 전노협 관련 구속사례

검찰은 전노협 출범에 대비하여 이미 1989년 12월 30일 단병호 전노협

의장(당시 전노협준비위의장)에 대한 사전영장을 신청했으며 12월 31일에는 태릉경찰서에 단의장 검거를 위한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또 시내 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설치하기도 했다.

1990년 1월 13일에는 영장없이 면목동 단의장 자택을 수색하여 노트와 유인물을 압수했으며 2월 28일 수배중이던 단의장이 불심검문에서 연행·구속되었다.

단의장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1989년 11월 노동자대회, 1990년 1월 전노협 창립대회관련 집시법, 쟁의조정법위반 적용) 복역중인데 서울 형사지법 구중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근로조건 개선 등의 경제적 범위를 벗어나 법질서와 체제를 부정하고 자본가를 타도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노동운동은 용납될 수 없다”며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편 단병호 의장이 구속된 후 전노협의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김영대씨(34세, 전청계곡북노조위원장)도 1990년 5월 19일자로 집시법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이와 함께 5월 3, 4일 전노협 산하 노조들의 KBS·현대중공업 경찰투입에 항의하는 연대파업과 관련하여 인천지역노동조합협의회 의장 최동식(30세, 남일금속 노조위원장), 수석부 의장 조대천(30세, 경일화학 노조위원장), 사무차장 박인숙(27세, 여), 안효민(27세) 등 인노협 간부 4명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검찰이 검거에 나섰다.

전노협에 대한 집중탄압 결과, 5월 3, 4일 총파업을 이유로 한 조합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구속이 있기 이전에도 이미 전노협의 중앙집행위원 37명 중 10여 명이 제 3 자개입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으며(「조선일보」 5월 1일자) 이미 2월 한달 동안 전노협 가입노조에 대한 업무조사방침에 따라 업무조사에 들어갔다가 이를 거부한 70개 노조 중 1차적으로 36개 노조를 무더기 고발한 바 있었다.

이리하여 5월 말까지의 구속노동자 집계현황을 보면(전노협, 「상반기 노동운동탄압백서」) 구속자 총수의 70% 정도가 전노협의 중앙위원이거나 단위사업장의 집행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2) 봄철 임금교섭 앞둔 구속바람

울산 1989년 11월 울산노동조합협의회(이하 울노협)준비위가 결성된 직후부터 안기부, 경남도경, 울산경찰서 등 공안수사기관들의 울산공단안 학생운동권 출신 노동자에 대한 검거선봉이 불기 시작했다. 1987년 7, 8월 대투쟁 때, 그리고 1989년 현대중공업 장기파업에서 이 지역노동자들의 거대한 잠재력을 감지한 정부와 사용자 측은 1990년 임금협상과 단체교섭을 앞두고 전체 노조원이 5만 명에 이르는 전국최대규모의 울노협준비위가 출범하자 바짝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를 사전에 힘으로 제어하고자 했다.

학생출신 노동자로는 1989년 말 현대중공업 조유식(27세)씨를 비롯 현대종합목재(주)의 구자춘씨 등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현대목재의 김명숙(28세, 여), 이선희(24세, 여)씨 등이 공문서 위조로 구속되었으며 1월 23일 정대화(27세)씨까지 포함해 모두 6명이 구속되었고 2월 10일 이전까지 일반노동자까지 포함하여 구속자는 15명 선을 넘어섰다.

한편 상여금 지급관련 쟁의로 인해 현대자동차의 이상범(34세) 위원장 이하 노조간부 10여 명이 고발되었고 현대중공업도 이영현(29세) 위원장이 구속되는 등 정부의 소위 '산업평화'를 위한 강경대응방침이 임투 전부터 돌아치고 있다.

태백 강원도 탄광지역 노사분규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유국현 춘천지검 영월지청장)가 임투를 앞둔 탄전지대에 노동운동가 일제검거라는 희오리바람을 몰고왔다.

합수본은 이 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을 연행, 수사하면서 보도자의 접근은 물론 가족들의 면회까지 금지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은 2월 20일 광산노동자협의회(태백시 상장동, 의장 배진, 34세)에서 의장 배씨와 사무국장 조용일씨 등 6명을 강제연행한 데 이어 21, 22일 이틀간 박천수(35세, 강원 탄광), 차장훈(29세, 한성탄광)씨 등 2명을 추가연행했다. 이밖에도 수사본

부는 10여 명을 더 추가하여 내사를 벌였고 강원도경 대공과장이 직접 태백 현지로 내려와 진두지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국가보안법 적용 사례

소위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에 적용되어 온 국가보안법이 노동조합간 부들에게도 몇몇 적용되어 노조활동의 이념을 당국이 세밀히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또 국가보안법이 일반에게 주는 위화감을 심분 활용하여 노조의 활동방향이나 성향을 매도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결정타로 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국보법을 이용한 활동의 제약과 탄압이 예상되는바 각종 노동관계법 이외에도 노조활동의 자유를 실제적으로 제약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역시 법개정운동의 대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일반인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는 반기본권적인 그리고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이 법이 실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데 어떻게 쓰였는지 살펴보자.

사례 1 인천 명성전자

인천시경 대공분실은 1990년 1월 11일 명성전자 노조위원장(김귀자, 인노협 사무차장)과 노조 문화부장 등 간부 2명을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1989년 8월 『조선통사』 등의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회사측에 의해 고발되었는데 회사측은 당시 노조사무실을 몰래 침입하여, 서랍과 책장을 뒤지고 사진을 찍어 이를 증거로 노조간부들을 고발했다. 이 사실에 대해 노조측은 소지하고 있던 이유(조합원이 맡겨놓은 것이라고 함)를 해명하고 회사의 무단침입, 사진촬영에 항의하여 그대로 넘어갔던 일이 있었는데 5개월이나 지나 임투를 앞두고 갑자기 노조위원장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구속한 것은 전노협, 지노협의 핵심사업장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사례 2 태평양노조 서울지부

치안본부는 2월 7일 태평양화학 서울본사노조지부장 윤명선(1987년 노조결성 후 초대지부장, 44세)씨를 연행,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했다.

윤지부장은 1989년 10월 『노동해방문학』에 실린 박노해의 글 “자본가 논리를 반박한다”(김우중 회장의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를 비판한 글)를 발췌하여 교육자료로 조합원들에게 나눠준 바 있는데, 이것을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뒤늦게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박노해씨의 글은 당시 보안법 저촉 여부가 법적으로 판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지부장의 활동에 대한 보안법 적용이 상당한 무리가 아닌가 라는 비판이 뒤따랐다.

사례 3 대림자동차

1990년 2월 전경 600여 명이 마창의 대림자동차노조 사무실을 포위 수색하여 노조간부 2명을 연행 구속했는데 이승필 위원장은 노조도서문고가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그 소지혐의’로, 김윤수 홍보부장은 도서문고 열쇠관리자였다 하여 ‘이적표현물 대출혐의’로 각각 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이적표현물이라 하여 노조사무실에서 나온 책들은 『태백산맥』, 『남부군』, 『무기의 그늘』 등 합법적 출판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서적들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노조들도 노조핵심간부의 연행·구속은 이들을 조합원들로부터 분리 제거시켜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사례 4 울산 현대정공

현대정공노조 홍보부장 김상명씨는 조선대학교 교지에 실린 농산물 수입 개방을 강요하는 미국과 현정권을 비판한 “미국이란 어떤 나라인가”라는 글을 노보에 옮겨 실은 이유로 이적표현물 제작배포혐의로 구속되었다.

4. 고문과 블랙리스트

1) 납치·고문·가혹행위

납치·고문 등 노동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사건이 1990년에 들어와 급증한 것은 1990년 벽두부터의 초강경 방침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된다. 영장없는 불법연행과 사전 구속영장 한두 건으로 파업농성중인 노동자 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연행하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났다.

그 중에서도 안기부, 치안본부 등 소위 정부의 사찰기관이 노동운동 탄압에 깊숙이 관여하며 노조동향까지 파악하고 간섭하는가 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납치와 고문, 가혹행위를 휘두르고 있어 노동자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다.

더구나 제6공화국 출범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상표처럼 내걸었던 “더 이상의 고문은 없어야 합니다. 이 사람 믿어주세요” 식의 식언이 잊혀지기도 전에 고문으로 인한 희생자가 생겼다는 것은 노동운동뿐 아니라 이전에 관한 제반 여건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1990년 들어 악화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사례 1 포항제철해고자 납치

10월 8일, 포항제철 해고노동자 김철현(30세, 남)씨가 포항에서 안기부에 게 납치되었다.

김씨는 재야문화운동단체인 ‘한터울’ 사무실에 들렀다 귀가하기 위해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승용차 3대에 나누어 탄 10여 명에게 납치되었는데 김씨를 태워간 서울 1루 5406 르망승용차는 서울 성북구 석관동 산 1 세기 문화사(안기부)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씨에 따르면 자신을 연행한 사람은 안가에 도착하자 스스로 안기부요원이라고 신분을 밝혔으며 수배자로 보이는 세 사람의 소재를 추궁했고 포철노조의 최근 동향과 포항지역

재야운동단체들의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했다고 한다. 이들은 김씨가 '모른다'고 하자 각목으로 허벅지와 옆구리를 구타했으며 "불법연행이 아니냐"고 따지자 "우리도 불법연행인 줄 안다"고 천연덕스럽게 답변했다. 이들은 김씨를 2시간 채우고 철야조사 후 30시간 만에 풀어줬다. 납치된 김씨는 1988년부터 노조대의원으로 활약하면서 '노조위원장 직선주장' 등 노조민주화추진세력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1989년 10월 회사 체육대회에서 사물놀이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1990년 1월 해고되어, 6월 법원에 해고 무효확인 소송을 내놓은 상태이며 포철노조는 7월 직접선거로 제3대 집행부를 새롭게 출범시키면서 민주노조로 탈바꿈하려는 시점이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이 납치사건과 관련있다고 보고 있다.

사례 2 최동씨 고문 후유증으로 분신자살

8월 7일 한양대 사회과학관에서 최동(30세, 남, 성균관대 국문과 제적)씨가 분신자살한 것이 발견되어 한양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최씨는 5공시절인 1984년(대학 4년째), '전두환독재타도'를 외치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되어 약 9개월간 복역했다.

그는 석방 후 부천의 프레스공장에서 노동자생활을 하며 노동운동을 시작했고 1987년에는 동료들과 함께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를 만들어 적극 활동해 오다가 1989년 4월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재구속되었다.

당시 최씨와 함께 구속되었던 동료들에 의하면 최씨는 치안본부 홍계동 대공분실에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부터 두 번이나 자살을 기도하는 등 가혹한 고문으로 인한 신경쇠약증세를 보였다고 했다.

최씨의 가족과 동료들은 최씨의 분신자살은 바로 고문으로 인한 신경쇠약증이 가져온 결과이며 자살이지만 가혹행위로 인한 타살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최씨는 치안본부 조사과정에서 3~4일 동안 계속 '잠 안재우기' 고문 등을 받았으며 서울구치소에서도 4개월이 넘도록 독방에 감금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당시 가족들도 면회를 통해 최씨의 건강이 극도로 나빠진 것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진료를 요청해 정식진료를 받았

고, 그 결과 "심각한 신경쇠약증으로 자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최씨는 이러한 의사소견서가 참작되어 1989년 9월 집행유예로 출소했다. 출소 후 10개월 가까운 치료에도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는데 최씨는 "누군가 나를 미행하고 있다", "경찰이 나를 죽이기 위해 AIDS균을 감염시켰다"는 등의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말을 해 주위사람들을 안타깝게 했다.

또 자살하기 3개월 전쯤에도 집을 나가 부천의 한 셋방에서 연탄가스로서 자살을 시도할 만큼 최씨는 무력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씨 분신자살의 진정한 원인과 배경은 그가 남긴 유서가 말해주고 있다. "저들의 목적은 인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들의 의도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무엇하나 할 수 없는 폐인이 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집을 떠나기 전 쓴 이 구절은 고문이 한 인간을 파괴했다는 것, 그 고문이 5공화국의 몰락을 가속화시켰던 박종철의 고문사에 뒤이어 6공화국하에서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근절시킬 어떠한 응징이나 대비책도 없다는 사실과 함께 온 국민을 전율케 했다.

사례 3 현대구속자 이감중 폭행

4월 28일 현대중공업 파업에 대한 경찰진압 작전과 함께 울산 남부경찰서 대용감방에 구속 수감중이던 권용목씨 등 현대계열사노동자 12명이 부산구치소로 이감초치되자 이를 거부하다가 경찰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5월 19일 이들을 접견한 문재인, 송철호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 모두 몸에 찰과상과 피멍 흔적이 남아 있었으며, 현대중공업노조 수석부위원장 우기하(31세)씨는 폭행을 당해 머리를 15바늘이나 꿰매는 중상을 입고 그대로 남부서 대용감방에 수감되어 있으며, 김남석(27세, 현중)씨는 경찰관이 무릎으로 허리를 쳐올리는 바람에 크게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남부경찰서 배은호 서장은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잡아땀다.

한편 현대중공업 파업의 배경을 보면, 작년(1989년)에 구속된 파업지도부의 형량이 2심에서 더욱 무거워졌던 데 대한 반발로 집단조치가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다시 위원장(이영현)과 부위원장(우기하)이 구속되자 발발한 것이다.

사례 4 현중 파업으로 구속된 계열사노동자들에 대한 가혹행위

현대중공업 파업과 공권력투입, 강제진압 그리고 노조간부 구속이 노동쟁의에 대한 해결을 주로 힘에 의지하는 정부정책을 다시 한번 실감케 하는 가운데 구속노동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5월 29일 현대중공업 조직부장 조주남씨는 울산지점 33호 검사실에서 조서를 작성하다가 담당 정병대 검사와 검찰에 근무하는 주사 2명으로부터 주먹, 구둑발로 머리와 얼굴 등을 집중적으로 얻어맞는 폭행을 당했다.

다음날 조주남씨를 면회한 가족들은 처음 조씨를 보고도 얻어맞고 부어 오른 얼굴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또 현대자동차의 김강희 부위원장은 경찰조사 과정에서 바늘로 손톱 밑을 찔리는 고문을 당했다고 한다.

2) 엄존하는 블랙리스트

현대판 노비문서로 불리는 블랙리스트는 법으로도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을 뿐 아니라 노동운동의 자유를 막고 때로는 생존권을 박탈하는, 말 그대로의 노비문서이다.

이것은 보통 공단지대의 관할서와 사용자들이 긴밀한 협조 아래 노동운동을 사전예방하고 소위 ‘불순분자’를 아예 격리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을 노예처럼 길들여 보겠다는 발상으로 만든 노동운동 경력자들의 명단으로서 1970년대부터 그 존재가 수차례 확인되어 왔다.

이것이 최근에 들어 전산화되자 더욱 현대화되고 전국을 망라하게 되어 경찰이나 노동부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어 왔다.

1990년 11월 국정감사에서도 이상수·홍기훈 의원이 “노동부가 단병호 등 노동계 인물을 대상으로 작성한 신상카드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노동부는 답변에 나서 위 요구의 근거가 되었던 「중앙일보」 3월 17일자 보도는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노동부는 1990년 3월부터 노동계 문제인물에 대한 블랙리스트 작성(대상자 148명) 및 특별관리와 전노협 와해의 일환으로 종래 경찰이 해왔던 3자개입행위 수사에 근로감독관이 적극 나서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작성할 필요도 없다고 강력하게 그러나 상투적으로 부인하였다.

이와 같이 관계기관이 국민 앞에서 강력한 부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례가 밝혀져 불신을 더하고 있다.

사례 1 범죄경력조회 불법활용

경찰이 일반 기업체의 부탁을 받고 사용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범죄경력조회’를 불법으로 해줘 업체들이 사원채용에 있어 블랙리스트로 활용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한겨레신문」 2월 24일자).

2월 23일 치안본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기업체 채용대상자 신원조회 의뢰 현황) 각 시·도 및 일선 경찰서는 지난 1989년 한해 동안 모두 220개 업체로부터 4만여 명의 채용대상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받아 치안본부에 보관되어있는 개인별 20개항에 이르는 컴퓨터자료를 제공했다.*

그러나 경찰은 정부투자기관, 재투자기관의 중역 아닌 일반직원 채용은 물론, 상업, 한일, 조흥은행 등 시중은행 그리고 삼성생명, 현대해상화재보

* 현행법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이 법 시행령의 보안 업무규정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경찰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범죄경력자료는 ① 공무원 임용예정자, ② 국영·정부관리기업체 중역, ③ 군수업체 신규채용에 한해서만 제공할 수 있으며 남용하면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협, 럭키화재해상보험 등 재벌그룹 산하의 보험회사와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등 방송사, 극동정유, 쌍용정유 등 정유회사 신규채용에까지 범죄경력을 조회해 주었던 것이다(기타 자유총연맹, 의료보험연합회, 농협,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활용하였음).

한 기업의 인사관리자는 “노조결성 보편화에 따라 개별업체 외에도 상당수의 기업에 일반화되는 추세이며 신원조회결과 시위경력 등이 나타난 대졸사원은 대개 불합격 처리해 왔다”고 블랙리스트 사용을 인정했다.

사례 2 경찰이 블랙리스트 만들어 감시

1990년 2월 서울시경에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노동문학사 편집부장 김태중(26세, 남)씨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경찰이 재야·노동·청년·학술단체의 감시대상자 약 65,000명의 개인신상카드를 만들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카드는 개인별 고유번호가 있으며 20개 항목에 걸쳐 자세한 신상기록과 경력(의식화 과정, 주요활동 전과기록, 관계·가입단체 등)이 파악되어 있다.

위 김태중씨의 경우는 고유번호 441번이며 ‘노동현장 위장침투자’라는 제목 아래 현장취업사실과 점거농성에 가담한 경력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그동안 국회에서 ‘보안관찰법상의 관찰대상자’(형법, 군형법, 국가보안법상의 내란목적 살인죄, 외환죄, 반란죄, 간첩죄에 국한됨) 이외에는 따로 기록을 관리하거나 감시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해 왔던 것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치안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일선경찰서에서 필요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고 개인신상카드의 존재를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한겨레신문」 2월 27일자).

사례 3 감시·순화담당제

경남 창원·마산·울산 등지의 노조간부들에 따르면 경상남도가 산업평

화정착을 이유로 쟁의대상업체 노조위원장 등 간부급과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노조원의 개인카드를 작성하여 시·군 공무원(주로 과장, 계장)들에게 담당 인원을 배정하여 ‘개별순화’를 지시했다고 한다(「한겨레신문」 3월 29일자).

이 개인카드에는 순화대상노조원의 인적사항, 가족·친구관계, 성향, 영향력 등이 낱말이 기록되어 있고 담당자들은 이들의 활동상황과 거취를 매일 분석·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

이 카드는 현재 22개 노조 52명의 핵심간부를 포괄하고 있는데 울산·양산 등을 합치면 2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활동 자체가 하나하나 감시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협박과 회유의 대상이 되어 노동자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인데도 ‘산업평화 정착’이란 미명 아래 기가 막힌 담당제까지 실시되고 있으니 1990년 노동정책의 기초는 이 감시순화 담당제가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시·군 공무원에게 이러한 정보·사찰의 임무까지 떠맡기는 것 역시 공무원으로서의 정당하고 떳떳한 공무를 수행할 권리를 박탈하고 개개인을 감시자 또는 정권이나 사용자의 하수인 정도로 전락시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3) 보안사 노동자 사찰

10월 4일, 보안사에 강제연행된 뒤 수사협조를 하는 프락치활동을 하다 가 탈영한 윤석양(24세, 외국어대 러시아어과 4년 제적)씨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국군 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이 사실로 밝혀지고 그 증거자료가 폭로되어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주었다. 윤씨가 제시한 사찰대상자 명단에는 양심적 민주인사를 포함, 총 1,303명의 대상자 중 노동운동관련자가 247명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노협 및 지노협의 주요간부는 물론, 단위노조간부와 일반노동자까지 사찰명단에 들어 있고 이들은 모두 개인 고유번호로

분류되어 있으며 개인의 인적사항과 활동사항이 상세히 파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은 5공화국이 고문(박종철, 권인숙, 김근태 등)수사, 정보·사찰정치로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만 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금 6공화국의 부도덕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

제6공화국 출범 초기 노태우 대통령이 심각하게(?) “이제 다시는 고문 수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했던 그 순간에도 보안사 등 사찰기구에서 5공화국에 이은 사찰정치가 중단없이 계속되어 왔다. 더구나 1990년 들어서는 자료가 컴퓨터 디스켓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 첨단장비를 동원한 불법사찰은 한층 진일보하고 있다.

보안사가 군관련 정보수집과 군수사업무라는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정치인, 재야민주인사, 노동계, 학계 등 정권안보차원에서 민간인 사찰을 해온 것은 6공화국의 인권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 하겠다.

노동계의 사찰대상자 중 전노협 단병호 의장의 경우를 보면 사찰번호는 314번이며 인적·가족사항과 교우 및 배후인물, 정당 및 사회단체활동이 낱알이 기록되어 있고 주요동향란에는 좌담과 강의, 인터뷰 내용까지도 상세히 파악하고 있다.

이밖에도 각종 수사·전과기록을 토대로 인맥과 성향 등을 분석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사찰 대상자(노동계)

- 전노협 : 단병호 의장 등 78명
-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 신철영 의장 등 40명
- 전교조 : 윤영규위원장 등 27명
- 서노련 사건(1986년) : 김문수씨 등 15명
- 노동상담소관계자 : 이봉우씨 등 9명
- 개별 단위노조간부·일반노동자 : 59명
- 기타 19명 등

5. 조직사건

1987년 6·29 이후 뜸해졌던 국가보안법 적용의 ‘조직사건’이 1990년 들어 급증했다. 이는 ‘정권의 안위’를 곧 ‘국가의 안보’라고 역설했던 과거 독재정권의 우스꽝스러운 논리가 다시 등장하고 있고 여전히 진보적인 사상, 진보적인 운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간 국보법의 문제점 지적과 철폐요구는 수없이 있어 왔다.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의 증진, 동서냉전구조의 완화라는 현실 국제정세 변화에도 맞지 않는 법일 뿐더러 정부당국 스스로 더이상 통일과 남북교류라는 당위와 반국가단체, 이적행위 처벌을 병존시키는 데 논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을 통치권자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나 그것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없어진 지 오래여서 여당 내에서도 국보법의 개정은 논란이 되고 있다.

어쨌든 민주적 기본권 중의 기본인 사상·양심의 자유를 크게 가로막고 있는 국보법의 철폐없이는 노동자들의 활동의 자유는 물론 사용자·정부의 논리로부터 독립한 자유로운 사상과 이념을 추구할 길이 없는 것이며 그것은 곧 노동운동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1) 기독교문화노동운동연합

구속일시 1990년 2월 15일

구속자 이승재(27세), 민병곤(24세), 최은석(27세), 강문대(24세), 이덕준(27세), 이덕주(24세), 김근주(25세), 박현희(23세), 김선희(25세), 조선경(25세), 임영환(25세), 박문재(31세)

기독교문화연구회(이하 기문연)는 서울대에 공식 등록된 서클로서 하나

님의 사랑과 정의를 소명으로 하여 가장 어려운 이웃인 구로공단지역의 닭장집촌과 봉천동의 달동네에서 공부방과 탁아소를 운영해 왔으며 사회를 바로알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공장생활과 농촌활동을 하기도 했다.

또 공개적 회지 '대학기독신문'과 '복음청년'을 발행하여 복음주의적 신앙의 입장에서 사회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펴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2월 15일, 12명이 구속 17명이 수배를 당하면서 이러한 회보는 '이적표현물'로, 기문연 내 분과모임인 '기독교노동자회'는 '이적단체'로 단감하여 기소되었다.

기문연 사건 대책위는 "우리는 양심적인 신앙활동이라도 그것이 노동자와 관련되고 정치적인 것이 되었을 때 이적행위로 탄압받는 이 땅의 현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이 땅 수천의 노동자와 도시빈민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이적행위로 몰아버리는 정권을 하나님의 공의나 사람에 대적하는 권력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 진보적 소장학자 국가보안법 구속

구속일자 1990년 1월 17일

구속자 안민규(26세), 박태호(26세)

박태호(필명 이진경)씨는 합법출판물인 『사회구성체론과 사회과학방법론』의 저자이며 『현실과 과학』이란 잡지의 주요 필진으로서 잘 알려진 인물인데 1월 17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어 1월 23일 안민규씨가 연행되면서 2월 12일 언론에 보도된 안기부 발표에 의하면 이들이 대학 노동운동권 출신과 전국 노동현장에서 활동중인 사람 등 60여 명을 규합하여 1989년 5월 '노동계급'을 결성했으며 조직원 50여 명을 노동현장과 학원에 침투시켜 의식화투쟁을 선동하고 대학신문과 잡지 등에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론을 찬양하는 글을 기고해 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10명이 수배되었고 구속자 2명은 외부와 완전히 격리된 채로 불법 조사를 받았으며 구치소로 넘어온 후 면회는 가족들에게 구타로 인한 허리통증을 호소하기도 했다.

3) 일명 '북부지역노동자연맹'

구속일자 1990년 2월~3월

구속자 최중명(28세), 이병기(26세), 이승용(28세), 이경숙(27세), 왕해전(28세), 임종명(28세), 박남일(26세)

2월 13일 최중명씨는 영문도 모른 채 5~6명의 정체불명의 남자들에게 불법연행되어 사회주의노동자연맹 중앙위원이라는 허위자백을 강요당했다.

이는 당시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사노맹조직원 신형록(성균관대학교)씨가 진술한 상부선의 인상착의 등을 근거로 최씨가 연행된 것이었으나 최씨는 대질신문을 요구하며 출근부나 알리바이 등 반증자료를 제시하며 사노맹원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결국 이는 목살되었으며 2월 15일 최씨는 사노맹 창립선언문 제작 배포 혐의,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내용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뿐만 아니라 1986년부터 최씨가 활동해 온 서울 북부지역을 대상으로 각종 노동단체회원에 대한 불법연행과 조사가 집중되었다.

3월 8일 북부지역 공개단체인 북부노동자회관(우리들의 마당, 우리 글방, 노동자교육연구소, 야학연합회)과 덕계리 노동자사랑방, 노동자정치학교의 실무자들이 연행되었고 7명이 구속되었다.

구속자 중 이경숙씨는 남편 이승용씨를 면회갔다가 연행되어 수배자의 행방을 추궁당했고 모른다고 하자 공문서위조로 구속시켰으며 4월 29일 임종명씨를 연행, 같은 학교 출신의 수배자에 대하여 조사하다가 역시 모른다고 하자 2년 전 대한필프에 남의 이름으로 취업한 사실을 들추어내

어 공문서위조로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이렇듯 사회주의노동자연맹을 조사하던 중 북부지역 노동단체 활동가들을 대거 구속하여 증거가 불충분하자 대신 '북부지역노동자연맹'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사건이며 검찰조사단계에서는 이적단체 부분이 삭제되었다.

4) 민족통일민주주의노동자동맹

구속일자 1990년 4월 27일

구속자 김태진(32세), 김인선(29세), 이명학(23세), 박윤배(32세), 신남희(32세), 김용기(32세), 황순현(30세), 하승창(28세), 김진국(32세), 김중성(33세), 서재석(31세), 김소영(26세), 신준수(29세), 이강석(29세), 구자옥(22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자격정지 포함]~4년 확정)

이 조직은 1985년 구로동맹파업 이후 단위사업장을 뛰어넘는 노동자의 정치적 각성과 투쟁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 '서울노동운동연합'을 발전적으로 극복하고자 모인 사람들로 출발하였다.

이들은 노동자계급과 민중이 수행해야 할 당면 혁명의 성격을 민족통일민주주의민중혁명으로 규정하는 제반강령을 『우리의 현실과 과제』라는 소책자로 발간한 바 있으며, 이 강령을 중심으로 활동가들을 규합, 조직을 재정비하고 활동해 왔다. 잡지 『노동자의 깃발』을 28호까지 정기적으로 발행했다.

구속된 사람들은 “이 사회의 모순을 결코 좌시하지 않았으며 대개는 노동현장(대우중공업, 후지카, 한일스텐레스 등)에서 위장취업자, 불순세력 이니 하는 날조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투쟁을 이끌고 해고와 구속을 기꺼이 감수한 이들”이라고 가족들은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다.

이들은 4월 2일 집과 회사에서 영장없이 불법연행당했으며 책과 노트는 물론 개인용 컴퓨터까지 압수당했다.

5)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

구속일자 1989년 10월 18일

구속자 오동렬(31세), 김용숙(28세), 노병직(39세), 김진희(29세), 윤철호(29세), 권우철(31세), 노희찬(35세), 이태주(26세), 정종주(28세), 신동수(28세), 이면재(31세), 최남기(31세), 최병국(29세), 김창덕(28세), 최건섭(29세), 김혜인(27세), 이현영(30세), 심은남(27세), 장인성(28세), 차명진(32세)—불구속기소, 신진화(30세)—구속취소

(1심에서 징역 3년~1년 6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은 6월항쟁이 절정에 이르렀던 1987년 6월 26일 인천 부평역 앞 대중집회 현장에서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면서 발족했다. 인천·부천지역의 노동운동가들이 '노동자의 정치적 대변자'로서 임무를 자임하여 1987년 10월 대의원대회에서 기본노선을 확정짓고 민중민주정부 수립을 목표로 하는 정치조직으로 활동해 왔다.

강령에서 인노련도 당면한 민족해방과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 ① 인천·부천지역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구심이 되며, ② 노동자들의 정치의식을 발전시키고 여러 형태의 대중조직을 촉진시키며 모든 노동자들의 투쟁을 발전시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정치부대화하는 것을, ③ 또한 노동자들의 전국적인 정치적 통일과 노동자정당의 건설을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인노련은 기관지 『정세와 실천』을 4호까지 그리고 『노동자의 길』은 41호까지 발간하여 과학적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결합을 강조하였고 이를 공공연히 표방해 왔다.

구속자들은 1989년 10월 16, 17일에 걸쳐 17명이 연행·구속되었으며 12월에 추가로 4명이 구속되어 총 21명에 달한다. 이 조직의 재판에서는 김진균 교수 등 교수 14명과 권호경 목사 등 목사 85명이 '폭력혁명'

‘이적 단체’ 운운하는 검사측 논리에 대해, “소수 독점재벌의 손에 우리 사회의 엄청난 부가 집중되어가고 그로 인해 많은 폐해가 야기되는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를 주장한 인노련의 활동은 정당한 일면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6)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

구속일자 1990년 4월 12일

구속자 양재덕(43세), 유해우(42세), 양홍영(33세), 이형진(29세), 이상욱(36세), 장일수(31세), 조성범(33세), 박용수(26세)

치안본부는 4월 10일 인천노동상담소 소장 양재덕씨를 비롯 8명을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영장없이 연행, 밤샘조사를 한 후 이들이 지난 1988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노동자투쟁조직’을 결성한 뒤 인천노동상담소를 개설해 노동자들의 의식화 및 대규모사업장노조에 대한 지원사업을 벌여왔다고 발표했다.

7)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

구속일자 1990년 9월 19일~

구속자 남진현(27세, 중앙위원), 이명애(25세, 여), 현정덕(27세, 연락국장), 정은희(26세, 여), 이수한(23세, 지도책), 전금숙(23세, 여), 장오영(21세), 이귀영(23세, 여), 황성록(21세), 전광철(22세), 정종혁(22세), 심재섭(20세), 최영준(24세), 정현민(20세), 조정래(22세), 정은미(20세, 여), 장해숙(23세, 여), 윤경수(27세), 김옥현(28세), 정미화(22세, 여), 이동기(29세), 차무정(27세), 전해룡(25세), 유경중(28세), 최병규(25세), 한두석(27세), 윤진환(20세), 권종길(25세), 전인현(24세), 박강태(24세), 서상덕(20세), 이동균(27세), 김은미(22세), 이성주(27세), 공인현(22세), 이덕기

(23세), 이성철(27세), 이우철(24세), 박형민(19세), 임 준(20세), 박기평(박노해, 32세), 김진주(35세, 여), 최성철(25세), 이영자(27세, 여), 정주용(25세), 양봉안(21세), 이중섭(25세, 여)

국가안전기획부는 1990년 10월 30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에 대한 그간의 수사결과를 종합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장봉기를 통해 사회주의혁명을 노려온 지하조직 사노맹은 노동계, 학원, 종교계, 청년운동단체에서 1,600여 명이 활동해 왔으며 9월 19일 현정덕씨 등 3명이 구속된 이후, 10월 중순 추가 구속자까지 18명으로 늘어나면서 현씨는 국보법 중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뿐 아니라 ‘반국가단체가입’ 혐의까지 추가되어 기소되었다.

6공화국 들어 국내 운동단체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한 것은 일부 있으나 기소까지 된 것은 이번 사노맹사건이 처음이다.

안기부는 발표에서 10월 30일 현재 사노맹관련자 40명을 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150명을 추적·수배중이라고 밝혔다. 사노맹은 지난 1988년 10월 ‘제현의회—CA그룹’과 ‘노동자해방투쟁동맹’ 등이 당국의 수사로 와해되자 새로운 조직을 결성키로 하고 1989년 1월 핵심세력을 규합, 1989년 11월 공개적으로 사노맹 결성을 선언했다.

사노맹은 지금까지 각종 유인물과 책자, 월간지 『노동해방문학』 등을 통해 노동자 중심의 민중통일전선형성→노동자 전위당 결성→무장봉기를 통한 혁명→민중공화국 수립→자본주의 철폐 및 사회주의국가 건설이라는 목표를 세워놓고 전국규모의 조직을 결성했다고 한다.

안기부는 사노맹 핵심지도총책으로 중앙위원회위원장 배태웅씨(27세)와 핵심지도자로서 노동자시인 박노해씨(32세, 본명 박기평)와 그의 부인 김진주씨(35세, 여)를 꼽고 있으며 이들을 전국에 수배했다가 이 중 박노해씨 부부를 1991년 3월 검거하였다.

제 2 장

사용자에 의한 노동인권 탄압

1. 사용자 탄압의 특징

1987년 7, 8월 노동자대투쟁 이후 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급격히 확산되면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활발해졌다. 이제는 정부 권력과 사용자외 영향력에서 벗어나 노동자의 자주성을 선언하는 민주노조들이 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진출을 사용자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억제해 왔다. 노조결성을 막아내고 노조활동을 축소시키기 위해, 폭행, 감시, 도청 등이 행해지며,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는 현상에서 유령노조나 어용노조를 결성하여 노동자의 자주적 노조 결성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또한 단체협약을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체결하여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며 나아가 공권력을 불러들여 노동자들을 구속하게끔 한다. 사용자의 입장을 관철시키려는 이데올로기선전도 활발히 진행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90년 사용자 탄압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 1월 22일 민주노조의 전국적 협의체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결성되자, 사용자들은 이를 앞질러 1989년 12월 23일 '전국경제단체

총협의회'를 결성하였다. 이를 통하여 사용자들은 '단체협약 체결지침' '임금가이드라인 7%' '노사분규대책지침' 등 일률적인 지침을 정하여 산하 단체의 결속을 다졌다. 개별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들이 경단협의 지침을 내세우며 이를 관철시키려 했고 교섭을 거부, 지연하기도 했다.

둘째, 1990년 임금협상에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잔업거부, 조퇴 등 준법투쟁이나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돌입하는 형태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고발, 직장폐쇄 및 112신고를 통해 공권력을 불러들였다. 이를 통해 구속, 불구속, 고소·고발자를 양산해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지구의 경우에는 1990년 6월 21일 현재 구속 260명, 불구속 50명, 즉심 6명, 고소 고발자 140명, 해고자 16명에 달하고 있다.¹⁾

셋째, 이러한 물리적 탄압뿐만 아니라 파업기간 무임금을 적용하여 노동자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며, 전임자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노조활동 자체를 봉쇄하였다. 1990년 들어 무노동무임금의 적용은 급증하여 1989년에는 파업사업장의 27%가 적용된 반면, 1990년 8월 말 현재에는 84%로 급증했다.²⁾

넷째, 사용자의 탄압은 최근 몇년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산업구조조정과 맞물리면서 진행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장이전, 휴폐업, 외자기업 철수, 라인축소, 감원, 하청으로의 분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노동자의 집단해고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대책없이 사용자가 노동자를 그대로 거리로 내쫓는 폭력적인 행태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해서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심화시키고 있다.

1) 2부 2장 3절 참조.

2) 1990년 10월 15일 노동부 집계.

2. 납치·폭행·감시·도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탄압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폭행이나 납치, 테러 등과 같이 직접적인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하며 감시, 도청, 이데올로기교육과 같은 교묘한 방식을 취하기도 하는데 이는 노동자의 자주적 의사를 무시하고 신체행동을 구속하며 비밀을 침해한다.

이러한 사용자의 탄압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기 이전이나 이후의 노조활동 과정에서도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며, 특히 임금인상투쟁 시기나 단체교섭 시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사용자들은 일상적인 노조 활동을 방해하거나 파업농성을 깨기 위해; 더 나아가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으로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다.

특히 관리자나 같은 노동자로 구사대를 조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기업주가 직접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노동자들 사이의 싸움(소위 노노싸움)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다. 문제가 될 경우에도 폭행한 관리자나 노동자 개인을 가볍게 처벌하는 선에서 그치고 만다.

또한 폭력은 여성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여성노동자가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약한 것을 활용한 것이며, 여성노동자들에게 주입된 성적 수치심을 이용하여 성적 모독을 주기도 한다.

대기업인 경우에는 항상적인 감시와 물리적 통제를 행할 수 있는 감시 집단이나 구사대가 존재한다. 삼성재벌의 '5호담당제'나 현대중공업의 '감시경비원'이 그 예이다(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직접적 물리적 탄압이 한국기업의 노무관리의 일환으로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1990년 11월 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구사대폭력사건의 회수, 사업체명 및 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묻는 것에 대해 노동부가 "구사대폭력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렇지만 구사대폭력으로 1990년 4월 4일 관리자 이성준, 이윤천, 최형우가 구속된 인천 명성전자의 경우는 노동부의 답변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1) 납치·폭행

(1) 성적 모독까지 자행

인천 부평의 진성전자노조는 1990년 봄 임금인상 시기에 평균 20만 원선을 생계유지비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1,973원 인상을 요구하며 회사측과 협상을 해나갔다. 회사측에서는 경단협치침인 8% 인상안에 따른 567원을 제시하며 "이것이 싫으면 나가라"는 고자세로 일관했다. 노조측에서 임금인상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니네 팔자가 그런 걸 어떡하냐"는 등의 얘기도 서슴지 않았다.

협상이 진전없이 지지부진하자 노조측에서는 전조합원 100%의 찬성으로 쟁의발생신고를 내고 5월 8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이에 강경대응하며 4일 만인 5월 12일 직장폐쇄신고를 하고 매일밤 15명 정도의 술취한 관리자를 농성장으로 들여보냈다.

술취한 관리자들은 여성조합원들을 마구 때리고 발로 짓밟으며 목을 조이는 횡포를 부렸다. 또한 발로 가슴을 짓밟으며 위원장인 윤화심씨에게 '화냥년'이라는 심한 욕을 하기도 했다.

파업농성 이전 윤화심씨는 사무실로 불리어가 "빨갱이, 공산당이지! 작살내 버리겠다", "이년, 뱅뱅이를 돌려버리자"는 성적인 희롱과 협박까지 당했다.

(2) '바닥을 허로 활으라'며 인권 유린

운동용 불(스타)을 생산, 수출하며 종업원 650명 중 3분의 2가 기혼여성인 신신상사(경기도 미금시 소재)에서는 1990년 6월 24일 노조가 결성되었으나 회사측의 탄압으로 노조가 와해되었다.

노조가 결성되자마자 회사측은 종업원들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인 면담을 하여, "빨갱이들이 불순단체와 손잡고 노조를 만들었으니 회사가 망한다"는 주장을 하며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거나 강제사직서를 쓰게 하여 350여 명이 탈퇴하였다.